

해외 보험동향

| 총괄 오병국 (연구위원)

| 해외 보험동향

일본	이상우 (수석연구원)
중국	이소양 (연구원)
중국	김연희 (연구원)
싱가포르, 호주	장윤미 (연구원)
북미	김성균 (연구원)
EU	이승주 (연구원)
인도, EU, 영국	김윤진 (연구원)



13_호

[2023-2]

목 차

[특집] 신흥국 보험시장 현황: 인도 편	1
I.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 일본 대형 보험회사의 임원 성과보수 체계 현황	17
2. 일본 보험회사의 CVC 진출 및 스타트업 투자 동향	21
3. 중국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동향	24
4. 중국 보험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운용 현황	28
5. 싱가포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민영 의무의료보험 보장한도 확대 실시	31
6.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은퇴 후 효율적 인출전략에 관한 정책 연구	34
II. 북미	
1. 미국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비상사태 및 국가 비상사태 종료	37
2. 미국 건중특정법 및 건중 목록을 둘러싼 논쟁	41
III. 유럽	
1. EU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금지 규제 완화	45
2. 유럽 손해보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조치	48
3. 유럽 사이버보험 시장 동향	51
4. 영국 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정책: 디폴트옵션 도입과 현금성 자산 투자 경고	54

요 약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률 및 젊은 인구구조, 인도 정부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은 인도에 대한 기업의 해외 진출 유인을 높임. 인도 보험시장은 2022년 3월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10위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국영 보험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외국계 보험회사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계 합작 민영 보험회사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의 성장세에 주목할 만함

1. 국가 주요 현황

- 인도는 빠른 경제성장률, 젊고 역동적인 인구구조를 특징으로 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임)
(〈표 1〉 참조)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는 경기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2021년 4월~2022년 3월 8.7% 고성장이었고, 2021년 기준 경제규모 세계 5위를 기록함
 - 2023년 인도는 중국을 앞지르며 세계 1위 인구 수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인구의 2/3가량이 35세 미만, 인구 평균연령이 28세를 기록하는 등 젊고 견조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인도 정부의 경제 개혁 및 개방 정책에 이은 투자 활성화, 성장 중심 경제 정책 등으로 인해 해외 기업의 인도 진출 유인이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집권한 모디 정부의 '경제 개혁 및 개방' 정책으로 인도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투자 활성화, 성장 중심 경제 정책 등에 힘입어 2021년 4월~2022년 3월 FDI 유입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836억 USD를 기록함

1) Kotra 해외시장뉴스(2023. 1), "2022년 인도 경제 요약 및 2023년 전망"

〈표 1〉 인도 국가 주요 지표 및 전망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약 323만km ² (한반도 약 15배)	GDP(2021)	약 3조 1,763억 USD(세계 5위)
인구(2023)	약 14억 2,750만 명(세계 1위)	1인당 GDP	2,256 USD
평균연령	28세	경제성장률	8.7%
기대 수명	2100년 추계 86세	교역	수출 USD 2,918억 수입 USD 3,944억
고령화 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 7%	주요산업	서비스(54%), 제조업(26%), 농업(20%)

자료: 외교부; World population review; World Bank; UN; Pew Research Center; KOSIS

2. 보험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인도 보험산업의 주요 규제 변화는 크게 국영 보험회사 독점, 보험시장 자유화,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완화로 구분할 수 있음(〈표 2〉 참조)

- 1938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후 1956년 생명보험회사 국유화(LIC로 통합), 1972년 손해보험회사 국유화(GIC로 통합)가 차례로 이루어지면서 1999년 이전까지 국영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을 독점함
- 1999년 보험감독기구인 인도보험감독청(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IRDA) 설치 및 보험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민영보험회사 허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며 보험시장 자유화가 시작됨
- 2015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완화되며 외국계 보험회사의 인도 시장 진입이 용이해졌으며, 이후 2021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지분 기준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해외 보험회사의 인도 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2015년 보험업법 개정은 인도의 보험산업 규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지분 규제 완화, 보험감독청 IRDA의 권한 강화 및 건전성 규제 기준 제시 등임²⁾

- 201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지분은 1999년 규제에서 설정되었던 26%에서 2015년 49%로 확대됨
- IRDA가 지급여력, 자산운용, 수수료 등 보험업 감독에 필요한 규제 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IRDA의 개입을 허용함
- 솔벤시 마진(Solvency Margin) 하한 150%를 재무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보험업법에 명시함

2) 이승준·정인영(2019),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2015. 3), "Major Highlights of the Insurance Laws(Amendment) Bill 2015 Passed by Parliament", Press Information Bureau

〈표 2〉 인도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연도	보험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1938	• Insurance Act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제정
1956	• Life Insurance Corporation Act : 모든 민영 생명보험회사를 국영 생명보험회사 LIC(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로 통합
1972	• General Insurance Business Act : 국영 손해보험회사 GIC(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를 설립하고, GIC가 독점적으로 손해 보험사업을 운영하도록 권리 부여
1999	•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 Act 1999 : 민영보험회사 운영 허용 및 보험감독기구 IRDA 설치, 민영보험회사 최소 요구자본 및 지급준비금 기준 마련, 합작투자(JV) 외국 투자자 소유 지분 26%로 제한
2000	• Foreign Exchange Management(Insurance) Regulations : 해외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보험 포함)에 대한 규제 마련
2015	• Insurance Laws(Amendment) Act : 외국 보험회사 투자지분 제한을 기존 26%에서 49%로 완화하고 외국계 재보험사의 인도 지점 설립을 허용하도록 보험업법 개정, 보험감독청 명칭이 IRDA에서 IRDAI(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로 변경되고 권한이 강화됨
2021	• Insurance(Amendment) Act : 외국인 투자 비율 49%에서 74%로 완화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2021년 4월 발효된 보험업법은 외국인 투자 비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여 인도 보험시장 진입 또는 인도 내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는 외국 보험회사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2021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자본의 소유 지분 허용기준을 49%에서 74%로 확대함
 - 외국 자본 투자 규제 완화에 따라 글로벌 보험 그룹들이 소유 지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Generali와 Aviva는 최근 지분을 각각 68%, 74%까지 확대함

3. 보험업 감독과 규제

- 인도 보험산업은 1999년 제정된 보험 규제 및 발전 감독법과 관련 개정법에 근거하여 IRDAI(인도 보험감독청)가 보험회사 등을 감독함

가.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IRDA(Registration of Insurance Companies 2000) 4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면허가 부여되며, 면허 신청이 가능한 보험업 종목은 생명보험, 손해보험(개인상해 포함), 건강보험, 재보험임
 - 각 회사는 면허를 신청하기 전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1956)에 부합한 기업으로서 인도 산업부 내 기업등록부(Registrar of Companies)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허용되는 보험회사의 법적 형태는 국가 소유 유한책임회사(State-owned limited liability)와 민간 소유 유한책임회사(Privately-owned limited liability)이고, 상호보험과 외국계 보험회사 단독법인 운영은 허용되지 않음
- 2022년까지 보험감독청은 종합보험회사(Composite insurers)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지 않으나, 2022년 12월 발표된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법 개정에 관한 논의에서 종합보험회사 운영 허용에 관한 사항을 다룰 것임을 예고함

나. 보험회사 최저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1999년 제정된 IRDAI(보험감독법)에서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0억 루피(USD 1,300만), 재보험사의 경우 20억 루피(USD 260만)의 최저 자본금 납입을 명시함
 - 2022년 12월 정부는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법 개정에 관한 논의에서 최소 납입자본(Paid-up capital) 규정 삭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함
- 1938년 제정된 보험업법 Section 64V에 따라 인도 내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들은 솔벤시 마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2016년 IRDA(Assets, Liabilities, and Solvency Margin of Life/General Insurance Business) Regulations에서 솔벤시 마진을 150% 이상으로 규정함

다. 소비자보호 규제

-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에서 보험소비자들은 인도 보험감독청 내 민원해결 부서(Grievance Redressal Unit) 또는 보험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규제 기관은 민원 해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웹사이트에 해당 문서를 공개하고 민원 발생 시 일정 기간(Turnaround Times; TAT) 내에 처리해야 함

- 보험소비자가 민원 사항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 보험 ombudsman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ombudsman을 통해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인도 보험감독청은 보험회사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 지원을 보험감독에 규정하여(IRDA Obligations of Insurers to Rural Social Sectors Regulations 2000), 보험회사가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보험회사는 IRDAI가 정한 타깃(보험증권 수, 보험료)에 따라 중소 도시(Rural communities) 및 빈곤 계층에게 미소 보험(Micro-insurance)과 같은 보험상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라.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2021년 개정된 보험업법(Insurance Amendment Act 2021)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칙(Indian Insurance Companies Amendment Rules 2021)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상한이 49%에서 74%로 상향 조정됨
- 2015년 IRDAI는 외국계 재보험사의 지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제(Registration and Operations of Branch Offices of Foreign Reinsurers other than Lloyd's) 요건을 정의하며 외국계 재보험사 지점과 Lloyd's의 인도 내 사업을 허용함

마. 보험회사 투자 규제

- 2015년 개정된 보험업법은 모든 보험회사가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 자산을 구성할 것을 명시함

〈표 3〉 투자 포트폴리오 가중치 규제 예시(생명보험)

자산 종류	투자 기준
(1) 정부 증권(Government securities)	최소 25%
(2) 주 정부 증권 및 기타 승인 증권(State and other approved securities)	(1)+(2) 최소 50%
(3) a. 정부 승인 및 기타 투자(Approved investments and other investments)	50% 미만
- 1938년 보험업법 27A(2)DP에 명시된 투자	15% 미만
(3) b. 주택 및 (후순위)채권/자산유동화 증권 등	(3)b+(3)c 최소 15%
(3) c. 인프라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4. 보험산업 구조

- 인도 보험시장은 2021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10위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시장 중 하나임³⁾
 - 2022년 3월 말 기준 인도의 총수입보험료는 1,270억 달러로, 이는 세계 10위, 신흥시장 2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 다음으로 큰 규모임
 - 인도 보험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성장 속도가 지속된다면 2032년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을 제치고 세계 6위 규모의 보험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보험시장은 생명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76.1%, 손해보험이 23.9%를 차지하는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임

〈표 4〉 인도 수입보험료 및 세계 순위¹⁾

(단위: 백만 USD,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비중)	96,679(76.1%)	30,296(23.9%)	126,975(100%)
세계 순위	9위	14위	10위

주: 1) 2022년 3월 기준임

자료: Swiss Re, Sigma(No. 4/2022), "World insurance: inflation risks front and centre"

- 2022년 3월 말 기준 인도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4.2%, 91달러이며, 이는 세계 평균 및 다른 아시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 해석할 수 있음
 - 인도 보험시장 침투율은 4.2%로 세계 36위이며, 이 중 손해보험 침투율은 약 1%로 세계 평균 3.9% 대비 상당히 낮은 반면, 생명보험 침투율은 3.2%로 세계 평균보다 다소 높음
 - 인도 보험시장의 밀도는 91달러(생명보험 69달러, 손해보험 22달러)로 세계 국가 중 71위에 해당함
 - 코로나19 이후 인도 국민의 건강 인식 개선 및 정부의 건강 지원 프로그램⁴⁾에 따른 생명·건강보험 수요 확대와 인도 중산층의 자동차 구매 증가 등에 따른 손해보험 의무 가입 확대로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3) Swiss Re, Sigma(No. 4/2022), "World insurance: inflation risks front and centre"

4) NHA(National Health Authority)에 의해 디지털 헬스 생태계 구축 프로그램 Ayushman Bharat Digital Mission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Budget 2022 이니셔티브에서 23개의 원격 정신건강센터 설치를 발표함

〈표 5〉 아시아 주요국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 비교(2021년)

(단위: %, USD)

구분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침투도 ¹⁾	보험밀도 ²⁾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세계 평균	7.0	874	3.0	382	3.9	492
인도	4.2	91	3.2	69	1.0	22
홍콩	19.6	9,556	17.3	8,433	2.3	123
한국	10.9	3,735	5.8	1,971	5.2	1,764
싱가포르	9.3	6,742	7.5	5,414	1.8	1,327

주: 1)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수입보험료/명목GDP

2)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수입보험료/인구 수

자료: Swiss Re, Sigma(No. 4/2022), "World insurance: inflation risks front and centre"

○ 인도 보험시장은 국영 보험회사가 독과점 수준의 지위를 지속해 왔으나, 민영화 및 규제 완화 등 내외부 환경 변화를 거치며 민영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22년 3월 말 기준 인도 보험시장에는 24개의 생명보험회사, 32개의 손해보험회사, 1개의 국영 재보험사와 Lloyd's 인도 지점 포함 11개의 외국계 재보험 지점까지 총 68개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함
- 생명보험시장은 국가 소유 생명보험회사(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LIC)가 지배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손해보험시장은 대형사 5개 중 4개 회사가 국영 보험회사임
- 이처럼 여전히 국가 소유 보험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하나, 1999년 이후 시장 자유화와 2021년 외국계 보험회사 지분 기준 완화 등의 영향으로 민영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최근 정부는 IPO를 통해 국영 보험회사 지분을 매각하고 있으며, 민영 보험회사는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자본 확대, 투자 수익 실현 등을 시도하고 있어 보험시장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6〉 인도 내 보험회사 수

(단위: 개)

구분	2000. 3	2015. 3	2021. 3	2022. 3
생명보험	11(1)	24(1)	24(1)	24(1)
손해보험	10(4)	28(6)	33(6)	32(6)
재보험	1(1)	1(1)	1(1)	1(1)
외국계 재보험 지점	-	-	10	11
합계	21	53(6)	68(6)	68(6)

주: 1) 괄호 안은 국영(Public) 보험회사 수임

2) 손해보험에는 건강보험전문사(Stand-alone health insurers)가 포함됨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5.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22년 3월 기준 인도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7조 루피(한화 약 113조 원)로 전년 대비 10.2% 확대됨
 - 인도 생명보험시장은 2000년 시장자유화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23.7%로 급격하게 성장하였고,⁵⁾ 2018~2022년에는 연평균 10.8% 성장함
-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4조 9천 억 루피이며, 2018~2022년 동안 연평균 11.6% 증가함

〈표 7〉 인도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USD, 십억 루피, %)

구분		2018. 3	2019. 3	2020. 3	2021. 3	2022. 3	연평균 증가율
수입보험료	금액(달러)	73,240	72,673	80,791	84,690	96,679	-
	금액(루피)	4,588	5,081	5,730	6,287	6,926	
	증가율	9.6	10.8	12.8	9.7	10.2	
명목경제성장률		11.1	12.4	5.6	-2.8	18.9	8.2
총자산	금액(루피)	3,189	3,533	3,890	4,480	4,952	-
	증가율	11.7	10.8	10.1	15.1	10.5	11.6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Swiss Re, Sigma(No. 4/2022), "World insurance: inflation risks front and centre";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AXCO

- 인도 생명보험시장은 국영 생명보험회사 LIC가 독점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3개 보험회사 중 21개사는 외국 자본 보험회사와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2022년 3월 말 기준 LIC의 점유율은 61.8%로 2015년 대비 점유율이 약 11.2%p 감소하였으나, 상위 5개사 점유율 (CR5)가 87.8%로서 시장집중도가 여전히 높음
 - 2022년 3월 말 기준 인도 생명보험회사에 합작투자 한 외국계 파트너사는 영국과 일본계가 각각 4개사, 네덜란드 3개사, 미국과 프랑스 각각 2개사, 독일과 캐나다 각각 1개사 등이 있음

5) 이승준·정인영(2019),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표 8〉 인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단위: %)

순위	회사명	합작투자 파트너사, 국가	점유율			
			2000	2015	2021	2022
[국영]						
1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	99.98	73.0	64.1	61.8
[민영]						
2	SBI Life Insurance	BNP Paribas Cardif, France	-	3.9	8.0	8.5
3	HDFC Life Insurance	Abrdn, UK	-	4.5	6.1	6.6
4	ICICI Prudential Life Insurance	Prudential, UK	0.02	4.7	5.7	5.4
5	Max Life Insurance	Mitui Sumitomo, Japan	-	2.5	3.0	3.2
6	Bajaj Allianz Life Insurance	Allianz Se, Germany	-	1.8	1.9	2.3
7	TATA AIA Life Insurance	AIA Group, Hong Kong	-	0.6	1.8	2.1
8	Kotak Mahindra Life Insurance	-	-	0.9	1.8	1.9
9	Aditya Birla SunLife Insurance	Sun Life, Canada	-	1.6	1.6	1.8
10	PNB MetLife India Insurance	Met Life, U.S.	-	0.8	1.0	1.1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 (CR5)			100	88.6	86.9	87.8

주: 1) 2022년 기준 24개 생명보험회사 중 점유율 1% 이상인 10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3월 말 기준임

자료: IRDAI(2022),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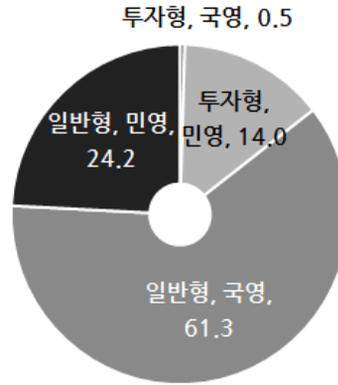
○ 인도 생명보험 상품은 크게 일반형과 투자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형 상품의 비중이 지배적이나 외국계 보험회사에 의해 도입된 투자형 상품의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3월 말 기준 투자형 상품 비중은 약 14%, 일반형 상품 비중은 86%이며 투자형 상품은 민영 보험회사에서, 일반형 상품은 국영 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됨
- 투자형 상품은 외국계 합작투자사에 의해 인도에서 판매가 시작된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세에 있으나,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인도 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음
- 생명보험 상품을 저축성과 보장성으로 구분하면, 판매 중인 상품의 대부분이 저축성 상품이고 보장성 상품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나 사망 등의 사고 보장 공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됨

〈표 9〉 생명보험 상품별 총수입보험료
(단위: 십억 루피, %)

구분		2021. 3	2022. 3	증가율
투자형 (Linked)	국영	14	32	130.2
	민영	896	971	8.4
	계	910	1,003	10.2
	비중	14.5	14.5	
일반형 (Non-Linked)	국영	4,018	4,248	5.7
	민영	1,358	1,675	23.3
	계	5,377	5,923	10.1
	비중	85.5	85.5	
수입보험료 합계		6,287	6,926	10.2

〈그림 1〉 생명보험 상품별 총수입보험료 구성비(2022)
(단위: %)



주: 국영은 1개, 민영은 23개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합임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 2022년 3월 말 신계약보험료 기준 채널별 생명보험 판매 비중은 직판채널, 보험설계사, 법인대리점 (은행) 순으로 높았고, 채널별로 판매 비중의 확대·축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직판채널은 인도 생명보험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판매채널로, 특히 거래 규모가 큰 단체보험의 주요 판매채널로 활용되며 최근 56%대의 판매 비중을 지속함
-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 비중은 2013년 40.6%에서 2022년 23.4%로 17.2%p 축소된 반면, 은행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한 판매 비중은 2013년 9.4%에서 6.9%p 상승한 16.3%를 차지함
- 온라인 채널의 경우 전체 채널에서의 판매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는 하나 코로나19 당시 온라인 채널의 필요성이 입증되었으며 최근 민영 보험회사들의 디지털 전환으로 간단한 보장으로 구성된 상품 판매 시 온라인 채널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10〉 인도 생명보험회사 판매 채널별 신계약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루피, %)

구분		2013	2015	2021	2022
보험설계사 (Individual Agents)	보험료	488.3	411.7	696.7	735.1
	비중	40.6	29.7	25.0	23.4
법인대리점: 은행 (Corporate Agents-Banks)	보험료	113.2	152.5	410.9	511.9
	비중	9.4	11.0	14.8	16.3
법인대리점: 기타 (Corporate Agents-Others)	보험료	12.5	15.8	38.1	51.6
	비중	1.0	1.1	1.4	1.6
중개인 (Brokers)	보험료	12.6	14.4	31.5	46.5
	비중	1.1	1.0	1.1	1.5
직판채널 (Direct Selling)	보험료	574.8	789.7	1,575.1	1,768.9
	비중	47.8	56.9	56.6	56.3
기타	보험료	-	3.24	31.0	27.9
	비중	-	0.2	1.1	0.9
합계	보험료	1,201.5	1,387.5	2,783.4	3,142.0

주: 1)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신계약보험료 합임

2) '기타' 채널에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 대리점, 웨에그리게이터, 보험 마케팅회사, 보험회사 웹사이트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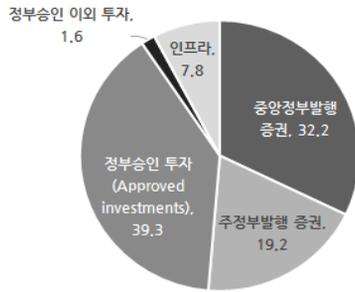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 인도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⁶⁾은 크게 정부발행 증권과 정부가 승인한 민간에 대한 투자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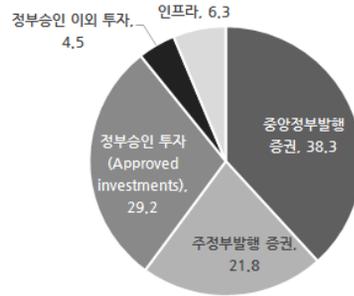
- 2022년 3월 기준 생명보험 자산운용은 중앙정부발행 증권(38.3%), 주정부발행 증권(21.8%)으로 정부발행 증권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부가 승인한 민간에 대한 투자(29.2%), 인프라(6.3%), 정부 승인 이외의 투자(4.5%)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5년과 2022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구성비는 거의 변화하지 않음

6) 2015년 IRDAI 규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산의 일정 수준(부채 대비 150%에 해당하는 자산)은 반드시 정부가 승인한 투자로 구성해야 하며, 보험회사 투자 포트폴리오는 해당 규제에서 제시한 자산 가중치를 준수해야 함

〈그림 2〉 2015년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 구성비 (단위: %)



〈그림 3〉 2022년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 구성비 (단위: %)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6. 손해보험시장 현황

- 인도 손해보험시장은 생명보험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지만 2022년 3월 기준 총원수보험료는 2조 2천 억 루피(한화 약 33조 원)로 전년 대비 10.8% 확대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됨
 - 인도 손해보험시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8.4%의 고성장을 기록하였고,⁷⁾ 2019~2022년 사이 성장세가 완만해졌으나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세를 꾸준히 지속함
- 2022년 손해보험회사 총자산은 전년 대비 11.8% 확대된 4조 8천 억 루피이며, 직전 4년간 연평균 15.8% 증가함

〈표 11〉 인도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USD, 십억 루피, %)

구분	2018. 3	2019. 3	2020. 3	2021. 3	2022. 3	연평균 증가율	
원수보험료	금액(달러)	24,764	24,669	26,637	27,221	30,296	-
	금액(루피)	1,534	1,725	1,922	2,021	2,240	
	증가율	17.1	12.4	11.4	5.1	10.8	
명목경제성장률	11.1	12.4	5.6	-2.8	18.9	8.2	
총자산	금액(루피)	2,689	3,143	3,626	4,333	4,845	-
	증가율	20.9	16.8	15.3	19.4	11.8	15.8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Swiss Re, Sigma(No.4/2022), "World insurance: inflation risks front and centre";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AXCO

7) 이승준·정인영(2019),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인도 손해보험시장은 일반·특수 국영 보험회사⁸⁾가 오랜 기간 독과점 수준의 지위를 누려왔으나, 최근 민영 손해보험회사의 점유율이 국영 손해보험회사의 점유율을 넘어섬

- 6개 국영 보험회사의 점유율 합은 2015년 56.4%에서 2022년 41.7%로 큰 폭(약 14.7%p) 하락한 반면, 건강보험전업사 포함 민영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점차 상승하여 2022년 기준 약 58%에 이릅니다
- 2022년 기준 CR5는 41.2%로 생명보험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가 낮은 편임
- 2022년 3월 말 기준 인도 손해보험회사에 합작투자 한 외국계 파트너사는 독일, 미국과 일본계가 각각 3개사, 호주와 남아공 각각 2개사, 영국과 캐나다계 1개사가 있음

〈표 12〉 인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집중도

(단위: %)

순위	회사명	합작투자 파트너사, 국가	점유율			
			2000	2015	2021	2022
[국영: 일반]						
1	The New India Assurance	-	33.3	17.8	15.6	15.9
3	United India Insurance	-	24.0	12.3	8.3	7.0
4	The Oriental Insurance	-	21.4	8.7	6.3	6.3
8	National Insurance	-	21.2	12.9	7.0	5.8
[국영: 특수]						
5	Agriculture Insurance Company	-	-	3.1	6.0	6.2
국영 합			99.9	56.4	43.7	41.7
[민영: 건강보험전업사]						
9	Star Health & Allied Insurance	Oman Insurance, UAE	-	1.7	4.6	5.1
[민영: 일반]						
2	ICICI Lombard General Insurance	FAL Corporation, Canada	-	7.7	6.9	8.0
6	Bajaj Allianz General Insurance	Allianz, SE Germany	-	6.0	6.2	6.1
7	HDFC ERGO General Insurance	ERGO, Germany	-	0.4	6.1	6.0
10	Tata AIG General Insurance	AIG Investments, USA	-	3.1	4.0	4.5
민영 합			0.1	43.6	56.3	58.3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CR5)			100	59.4	44.1	41.2

주: 1) 순위는 2022년 기준 32개 손해보험회사 기준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함

2) 3월 말 기준임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8) 특수 국영 보험회사는 농작물보험을 취급하는 Agriculture Insurance Company와 수출신용보증 기구인 ECGC가 있음. 인도 정부는 2020년 5월 일반 국영 보험회사 4개사 중 3개사를 합병하려 했으나, 2020년 7월 이를 취소함. 이후 정부는 국영 보험회사 IPO를 계획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각 회사의 성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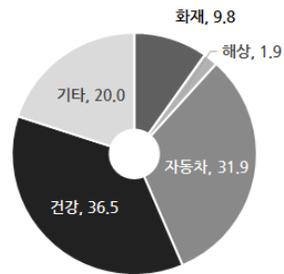
○ 인도 손해보험시장 종목별 점유율에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성장세가 주목할 만함

- 2022년 3월 기준 건강보험(36.5%)과 자동차보험(31.9%)이 손해보험시장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화재, 해상보험 점유율은 각각 20.0%, 9.8%, 1.9%임
- 코로나19 이후 인도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는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음

〈표 13〉 손해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단위: 십억 루피, %)

구분	2021. 3	2022. 3	증가율
화재	2,011	2,155	7.2
해상	348	416	19.5
자동차	6,779	7,043	3.9
건강	6,375	8,050	26.3
기타	4,356	4,404	1.1
계	19,871	22,070	11.1

〈그림 4〉 손해보험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 2022년 3월 말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상품별 판매채널 비중은 종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직판채널과 중개인 채널이 손해보험 상품 판매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화재, 해상, 자동차, 농작물 판매 등에서는 중개인 채널의 비중이 두드러졌고, 항공, 기계, 신용 종목 판매 시에는 직판채널이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5〉 참조)
 - 건강보험의 종류는 공보험, 단체보험, 개인보험이 있는데, 공보험은 100% 직판채널을 통해 공급되고 단체보험은 중개인과 직판채널을 통해 주로 제공되는 반면 개인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 비중이 압도적(71%)인 것으로 나타남 (〈표 15〉 참조)
- 온라인 채널의 전체 판매채널 대비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 인도의 젊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자동차 및 개인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표 14〉 인도 손해보험회사 상품별 판매채널 원수보험료 비중

(단위: 십억 루피, %)

구분		화재	해상	항공	기계	자동차 (자기 차량)	자동차 (배상 책임)	책임	건강	농작물	신용	기타
		보험설계사 (Individual Agents)	보험료	33	8	0	0	7	64	180	229	7
	비중	15	26	4	0	20	24	42	31	16	0	28
법인대리점: 은행 (Corporate Agents-Banks)	보험료	20	0	0	0	0	8	11	58	0	0	7
	비중	9	0	0	0	1	3	2	8	0	0	14
법인대리점: 기타 (Corporate Agents-Others)	보험료	3	0	0	0	0	16	25	19	0	0	2
	비중	1	1	0	2	0	6	6	3	1	0	3
중개인 (Brokers)	보험료	102	16	3	3	17	155	155	189	26	23	16
	비중	48	50	26	33	47	57	36	26	65	8	36
직판채널 (Direct Selling)	보험료	57	7	7	5	11	13	28	231	7	146	8
	비중	26	22	69	60	31	5	6	32	18	50	18
기타	보험료	0	0	0	0	0	15	35	5	0	125	0
	비중	0	0	1	4	0	6	8	0	0	42	0
합계	보험료	215	31	10	9	36	272	433	731	41	295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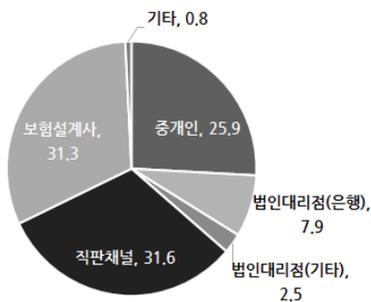
주: 1)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신계약보험료 합임

2) '기타' 채널에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 대리점, 웹에그리게이터, 보험 마케팅회사, 보험회사 웹사이트 등이 포함됨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그림 5〉 건강보험 채널별 구성비(2022년)

(단위: %)



〈표 15〉 건강보험 채널별 원수보험료(2022년)

(단위: 십억 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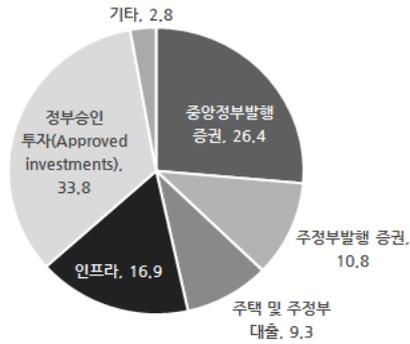
구분	공보험	단체보험	개인보험
보험설계사	0	15	214
중개인	0	169	20
법인대리점	0	53	24
직판채널	61	132	38
웹	0	0	3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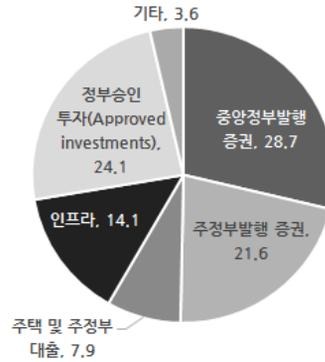
○ 인도 손해보험회사의 자산⁹⁾은 중앙 및 주정부발행 증권으로 주로 운용되고 있음

- 2022년 손해보험 자산운용 구성비는 중앙정부발행 증권이 29%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정부승인 투자(24%), 주정부발행 증권(22.0%), 인프라(14%), 주택 및 주정부 대출(8%) 순임
- 2015년 대비 2022년 인프라 및 정부가 승인한 민간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반면, 정부발행 증권 비중이 증가함

〈그림 6〉 2015년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 구성비
(단위: %)



〈그림 7〉 2022년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 구성비
(단위: %)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자료: IRDAI, Handbook on Ind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호

9) 2016년 IRDAR 규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산의 일정 수준(부채 대비 150%에 해당하는 자산)을 반드시 정부가 승인한 투자로 구성해야 하며, 보험회사 투자 포트폴리오는 해당 규제에서 제시한 자산 가중치를 준수해야 함

I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 일본 대형 보험회사의 임원 성과보수 체계 현황

요 약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추진 실적과 ESG 실적을 임원의 성과보수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다이이치생명(다이이치생명)은 임원의 성과형 연동형 주식 보수와 양도제한 주식 보수의 평가 항목에 SDGs와 중장기 경영실적 달성도 추가하는 임원 보수제도 개정을 2022년에 추진하였음. 도쿄해상홀딩스도 성과연동형 주식 보수 평가 항목에 ESG·중장기전략 달성도를 추가하는 임원 보수제도 개정을 2021년에 추진하였음

-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추진 실적과 ESG 실적을 임원의 성과보수에 반영하는 등 지속 가능 경영 실행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일본에서 지속 가능 경영의 리딩 기업인 다이이치생명(다이이치생명)홀딩스와 도쿄해상홀딩스의 임원 성과 보수 체계와 SDGs·ESG 실적을 반영한 성과 보수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일본 보험회사의 임원 보수체계는 고정 보수의 비중이 글로벌 보험회사보다 높은 수준임
 - 다만, 최근 성과보수 비중을 높이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장기 성과보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SDGs·ESG 실적을 성과보수에 반영하는 등 지속 가능 경영에도 노력하고 있음
- 일본 다이이치생명(다이이치생명)홀딩스의 임원 보수는 기본 보수, 단기 성과연동 보수, 주식 보수로 구성됨
 - 기본 보수는 회사 업적 성과에 관계 없이 해당연도 임원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여를 의미함
 - 단기 성과연동 보수는 회사 실적과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해당연도 임원에게 지급되는 변동급여임
 - 동 보수는 단기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회사의 중기경영계획 경영목표치 달성도에 연동되는 회사 실적 보수와 개별 임원이 담당하는 역할·직책 등의 목표 달성도에 연동되는 개인 성과 보수로 구분됨

- 주식 보수는 회사 실적과 개인 업무 성과에 대한 보수를 소속 회사 주식으로 보상하는 급여를 의미함
 - 동 보수는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경영목표를 기초로 선택한 지표의 달성도에 연동되는 성과연동형 주식 보수와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일정기간 양도 제한을 조건으로 직급별 기준액을 기초로 주식을 배분하는 양도 제한 조건 주식 보수로 구분됨
 - 양도 제한 조건 주식 보수는 해당 임원이 임기만료·정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양도 제한이 해제됨

〈표 1〉 일본 다이이치생명홀딩스 임원 보수체계

임원 구분	집행 임원		사내 감사	사외 감사	비고
	사내	사외			
기본 보수	○	○	○	○	직책에 따라 지급
단기 성과연동 보수	○	-	-	-	당해연도 업적평가 지표 달성도에 연동
주식 보수	성과연동형	○ ¹⁾	-	-	기업가치 개선 경영목표를 기초로 선택한 지표의 달성도에 연동(TSR, ROE, ROEV, SDGs 등)
	양도 제한 조건부	○	-	-	중장기 경영 목표 달성, 주주와 이익공유를 목적

주: 1) 회장은 지급하지 않음

자료: 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2022), “統合報告書”

○ 집행 임원 중 사내이사에게는 기본 보수, 단기 성과연동 보수, 주식 보수를 지급함

- 다만, 집행임원이 아닌 사외이사, 사내·사외 감사에 대해서는 기본 보수만 지급하고, 회장의 경우 성과연동형 주식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 사내이사에게 배분하는 성과연동 주식 보수는 환수(Clawback) 조건을 두고 있음

- 이사회가 재무제표의 중대한 하향 수정이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 사내이사에게 이미 배분한 동사 주식(또는 해당 주식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동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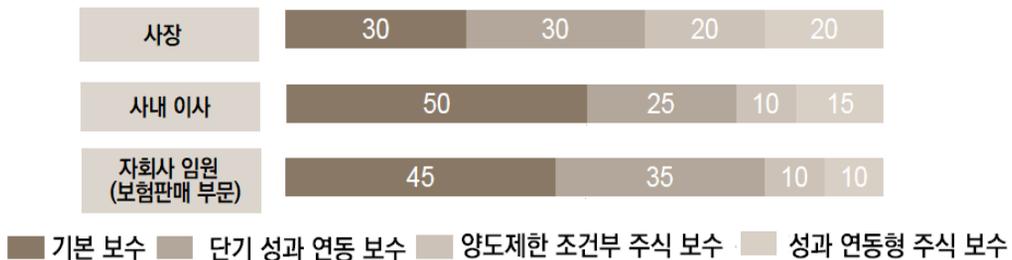
○ 성과보수는 임원의 업적과 능력, ESG 추진 실적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음

- 단기 성과연동 보수는 주로 그룹 수정이익, 그룹 신계약 가치, 자본총실률, 잉여현금흐름 등 재무지표 등 회사 목표의 달성 여부를 통해 결정됨
- 성과연동 주식 보수는 총 주주수익률(TSR), 그룹 ROE, 그룹 내재가치 수익률(ROEV),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등 기업 가치 개선과 관련된 지표를 통해 결정됨

○ 다이이치생명은 일본 생명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SDGs 추진 성과를 성과보수에 반영하는 임원 보수제도를 2022년에 도입함

- 동사는 SDGs 관련 국제 규범에 가입하고, 2018년 자사 중기경영계획에 SDGs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성과 관리를 통한 SDGs 실천을 위해 SDGs 성과를 보수체계에 반영함
 - 이러한 현상은 일본 보험회사들이 글로벌 SDGs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협약에 참여하고, SDGs 관련 국제 공시규범이 제정됨에 따라 일본의 보험업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¹⁾
 -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의한 SDGs 관련 평가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SDGs 평가지표가 향후 회사의 자산운용, 해외진출, 회사채 발행 등 회사의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동사의 임원 성과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SDGs 세부 항목은 회사 경영 이념·사업 방향성과 관련성이 높은 총 14개 항목이 선정됨
-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이용 효율성 개선, 그린 에너지 보급, 다양한 인종의 인권 대응, 기업 거버넌스·리스크 관리 개선, 일자리 창출·지역 활성화, 여성의 활약 촉진, 안심을 재고하는 혁신 기술 창출, 책임있는 투·융자를 통한 사회 공헌, 고객에게 체험 가치(CX) 제공 등임
 - SDGs 성과 관리(2022 현재/2024 목표치)는 예컨대 인적자원 분야의 경우 여성 조직장 비율 17%에서 30%, 차세대 글로벌 경영리더 확보 241명에서 300명, DT 인재 확보 100명에서 300명, 2차 건강검진 비율 85.7%에서 100%, 남성육아휴직 이용률 92.3%에서 100% 등의 목표치가 사전에 공시되고 있음
- 동사의 사업보고서에서 명시된 임원의 항목별 보수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사장의 연보수가 100%(기준값)일 경우 기본 보수, 단기 성과연동 보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보수, 성과연동 주식 보수 비율은 각각 30%, 30%, 20%, 20%임
 - 사내이사의 연보수가 100%(기준값)일 경우 기본 보수, 단기 성과연동 보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보수, 성과연동 주식 보수 비율은 각각 50%, 25%, 10%, 15%임
 - 상위 직책일수록 기본 보수보다는 성과 보수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보수 변동폭이 큼

〈그림 1〉 일본 다이이치생명홀딩스 집행임원 보수 비율(2022)



자료: 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2022), “統合報告書”

1) 다이이치생명 인터뷰 자료(2023. 5. 19)

- 사내이사의 보수(10명) 합계액 3억 4,300만 엔 중에서 기본 보수, 회사 실적 연동 보수, 개인 성과 연동 보수, 주식 보수가 각각 55.4%, 19.1%, 6.5%, 19.1% 비중을 차지함

〈표 2〉 일본 다이이치생명홀딩스 사내이사 전체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 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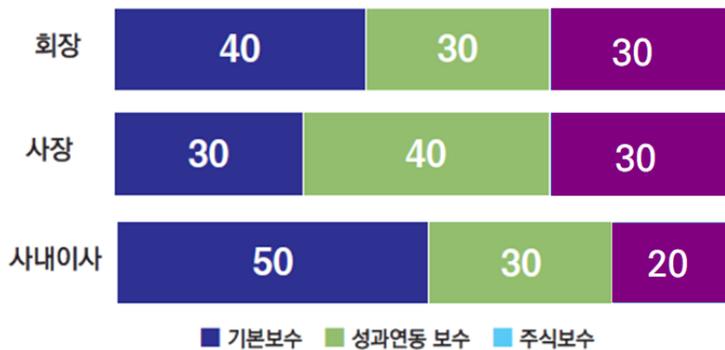
보수 등 총액		기본보수	성과연동 보수		주식 보수	대상 인원수
			회사 실적	개인 성과		
금액	341	189	65	22	65	10
구성비	100	55.4	19.1	6.5	19.1	-

자료: 第一生命ホールディングス(2022), “統合報告書”

- 도쿄해상홀딩스도 일본 손해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ESG 추진 성과를 성과보수에 반영하는 임원 보수제도를 2021년에 도입함

- 동사 임원 보수체계는 기본 보수, 단기 성과연동 보수, 주식 보수로 구성되어 다이이치생명과 유사함
- 차이점은 동사의 경우 사외이사에게도 성과연동형 주식 보수 지급, 주식보수 비율이 다이이치생명보다 10%p 낮을 것(30%), 성과연동 보수의 개인 업적 목표에 ESG·중장기전략 목표(글로벌화, 기능 강화, 인재·조직 강화 등)를 포함시킬 것 등이 있음
- 또한, 2022년부터 성과연동 보수 산정에 필요한 회사 실적 항목에 비재무지표인 직원 참여도(Engagement)와 지속 가능전략 관련 지표를 추가함
 - 지속 가능전략 관련 지표는 기후변동대책 추진, 재해 회복력 개선, 신체·정신 건강생활 지원, D&I(Diversity & Inclusion) 추진 지표가 반영됨

〈그림 2〉 일본 도쿄해상홀딩스 사내이사 보수 비율(2022)



2. 일본 보험회사의 CVC 진출 및 스타트업 투자 동향

요 약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개방형 혁신, 신규 사업 발굴, 업무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스타트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CVC에 진출하거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MS&AD홀딩스는 미국에서 420억 엔 규모의 CVC를 설립하고, 스미토모생명도 80억 엔 규모의 CVC를 설립하였으며, 도쿄해상홀딩스는 48억 엔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였음. 이외에도 다이이치생명, 니혼생명, 칸포생명이 스타트업에 투자 중이거나 투자 추진 중임

-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개방형 혁신, 신규 사업 발굴, 업무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스타트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CVC에 진출하거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본고는 일본 보험회사의 CVC 설립 현황과 스타트업 투자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CVC는 대기업이 출자한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며, 기업의 경영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회사임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투자한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한 기업과 시너지 모색, 외부 기술·인력 탐색 및 확보, 신사업 진출 등의 경영 전략적 목적과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함
 - 일반적인 VC(Venture Capital, 벤처캐피탈)는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함
 - 기업이 CVC를 별도로 설립하는 이유는 M&A 전 후보군 발굴과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업이 CVC를 통해 스타트업을 즉시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수 패턴임
- 일본에서 기업 대상의 CVC 실태조사(2023. 4)에 의하면 CVC에 투자한 기업의 약 90%가 2023년도 투자액을 2022년보다 증액·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함²⁾
 - 기업들의 CVC 투자 목적에는 ‘재무적 이익’보다 ‘전략적 투자 목적’의 응답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전략적 투자 목적 응답 기업 중에는 미래의 신규사업 창출(82%), 스타트업의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기존 사업 강화(79%)의 순으로 나타남³⁾
 - 스타트업 투자 시 문제점으로는 ‘스타트업과 협업할 때 기업 내부 업무부서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 ‘투자 대상 스타트업 발굴의 어려움’, ‘사내 우수 인력 확보, 경영진 설득 애로’, ‘투자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이 지적됨

2) 日本經濟新聞(2023. 4. 3), “大企業2割「新興投資を5割以上増額」・景気懸念でも旺盛”

3) 日本經濟新聞(2023. 4. 4), “大企業×新興、協業成果は途上・「社内協力が課題」5割”

- 일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CVC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는 은행·투자·보험업 등의 금융회사이며, 보험회사 중에서는 MS&AD홀딩스, 스미토모생명, 도쿄해상 다이이치생명, 니혼생명, 칸포생명 등이 CVC에 진출하고 있음
- MS&AD홀딩스⁴⁾는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일본 보험회사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45억 엔 규모의 CVC('MS&AD ventures')를 2018년에 설립하였음⁵⁾
 - 투자 목적은 글로벌 우량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스타트업과 제휴 등을 활용한 그룹사의 DT(Digital Transformation) 기반 강화, 사업 혁신, 신규 비즈니스 발굴, 혁신적 상품·서비스 제공 지원, 고객의 CX 향상임
 - CVC 투자규모는 2018년에 48억 엔을 투자한 이후 2022년에 추가로 140억 엔을 투자하는 등 누적 약 420억 엔 규모이며,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83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음
 - 투자 대상은 보험·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얼리 스테이지(Early stage) 중심의 스타트업이며, 주요 투자 영역은 동사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인슈어테크, 라이프&헬스, 사이버보안, 모빌리티 영역 등의 분야임
 - 향후 동사는 효과적인 투자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를 추진할 계획임
- 스미토모생명은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를 2020년 11월에 설립하고, CVC에 스타트업 전용 펀드 'SUMISEI Innovation Fund'를 조성하였음⁶⁾
 - 동사 CVC는 스타트업 투자를 통한 사업의 공동(스미토모생명·스타트업) 가치창출(Co-creation)을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비즈니스 체계이며, 펀드 조성 목적은 신사업 발굴·새로운 가치 창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임
 - 현재 전용펀드 조성 금액과 운용기간은 약 80억 엔, 10년이며, 투자 대상은 미들 스테이지(Middle stage)를 중심으로 시드(Seed)·얼리(Early) 스테이지에 대한 R&D 투자, 단기 사업 공동 가치창조 대상이 되는 레이트 스테이지(Late stage)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투자 영역은 '스미토모생명 Vitality'의 건강증진 활동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생태계 네트워크(Wellness ecosystem network) 구축 관련 분야,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보험 친화성을 느낄 수 있는 고객 체험(Customer Experience; CX) 분야', 보험회사의 새로운 접점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기술·서비스, DX 추진 분야 등임
 - 2022년 7월 말까지 투자한 8개 스타트업 중에서 1개사가 IPO하였음

4) MS&AD홀딩스는 미츠이스미토모화재와 Aioi Nissay Dowa 손보를 보유한 보험지주회사임

5) MS&AD(2022. 12. 27), "コーポレート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の投資枠を3億米ドルに拡大"

6) 住友生命保(2020. 11. 20), "CVC ファンド「SUMISEI INNOVATION FUND」を設立"

○ 도쿄해상홀딩스는 자율적이고 기동적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위하여 CVC 전용 펀드인 'Tokio Marine Future Fund'를 2022년 4월에 조성하였음⁷⁾

- 동사는 2016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후 현재 글로벌 7개 거점에 '디지털 LAB'을 설치하여 개방형 혁신을 통한 새로운 상품·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WiL' 등 글로벌 VC를 통해 혁신적 기술·혁신 사업에 관한 정보 수집과 스타트업과 협업·제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사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CVC 전용 펀드를 시범 설치하고, 그룹 내 디지털 전략 지원 목적을 추가 하면서 2022년에 CVC 전용 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함
- 현재 전용 펀드 조성 금액과 운용 기간은 약 48억 엔, 10년이며, 투자 대상은 시드 스테이지(Seed stage)와 얼리 스테이지(Early stage)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투자 영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슈어테크, 핀테크, 모빌리티, 헬스케어, 사이버보안, 지속 가능성, 딥테크 등의 혁신기술 분야임
- 향후 동사는 글로벌 7개 거점의 디지털 LAB을 통해 우량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전용펀드를 통해 투자한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술·솔루션을 활용하여 혁신적 상품·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할 계획임

○ 이외에도 다이이치생명, 니혼생명, 칸포생명이 스타트업 투자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은 임팩트투자⁸⁾를 위해 2021년에 약 160억 엔의 스타트업 투자 기금을 마련하였음
- 니혼생명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NISSAY CAPITAL을 설립하여 풍부한 자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였으며, 최근 3년간 투자 기업 중 11개사가 IPO를 하고, 공동 투자한 총 1,564개사 중에서 약 260개사가 IPO하였음
- 칸포생명은 VC 자회사 설립에 대한 인가 신청을 2023년 2월 금융당국에 신청하였음

7) 東京海上ホールディングス(2022. 4. 21), "コーポレート・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を本格稼働"

8) Impact Investment는 Social impact와 Finance investing 결합 용어로 재무적 이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자이며,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에서 수익 창출과 경제적 성과에만 주목하던 기존 투자와는 차이가 있음

3. 중국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동향

요 약

중국 온라인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함. 대형 보험회사들은 인수어테크 자회사를 설립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외부 사업자들과 협력하고 있음. 대부분의 중국 보험회사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성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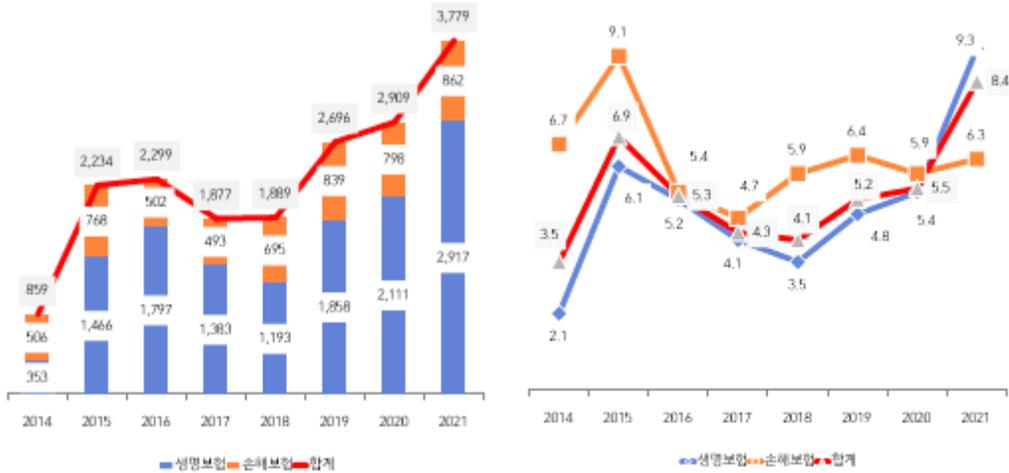
○ 중국 온라인보험 시장은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의 온라인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⁹⁾

- 2021년 중국 온라인보험 총수입보험료는 약 3,779억 위안으로 2014년(859억 위안)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총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3.5%에서 8.4%로 확대됨
- 2015년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온라인보험감독 잠정조치’ 등 온라인보험 관련 감독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보험의 면허 경영을 강조하고 온라인보험의 취급기준을 명시했으며, 온라인보험시장은 2016~2018년에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가 2019년부터 정상 성장세를 회복하였음
- 중국 칭화대학교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의 온라인보험 수요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채널은 소비자의 보험가입 주요 채널 중 하나임
 - 보험가입 주력 소비층인 30대 소비자는 온라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며 20대 소비자는 앞으로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득 수준 상승으로 온라인보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보험 가입 연수가 오래된 소비자일수록 온라인채널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소득, 고학력, 도시 거주 소비자들이 온라인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은 온라인채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나타났음

9) 이소양(2023. 5), “중국 보험산업에 부는 디지털 전환 바람”, 전문가오피니언, CSF중국전문가포럼

〈그림 3〉 중국 온라인보험의 총수입보험료 및 비중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함

○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온라인보험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함

- 중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온라인보험은 전통적인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 보험상품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작은 위험을 보장하는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및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채널에서 많이 구매하는 대표적인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은 방송보험, 항공자연보험, 교통체증보험, 주차위반딱지보험 등이 있음
 - 또한 Swiss Re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들은 온라인채널(웹사이트, 플랫폼 포함)에서 보험증권 관리(75%), 헬스케어(72%), 보험정보 조회(71%),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인과의 상담(57%)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¹⁰⁾
- 중국 보험회사들은 온라인보험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소비자 수요를 잘 파악하고 IT 기술 기반의 상품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IT 기술 기반의 업무운영과 상품 제공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시급함
- 2020년부터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업과 보험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손해보험업의 온라인화에 관한 지도의견’, ‘손해보험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3년 계획(2020~2022)’, ‘은행업과 보험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지도의견’ 등을 발표함
 - 이들 정책 가운데 ‘은행업과 보험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지도의견’은 5가지 분야의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 내용을 제시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험산업에서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성과를 2025년

10) Swiss Re(2023. 4), “中国人身险数字化核保趋势研究”

까지 달성하는 것을 요구함

- 중국보험협회는 '인슈어테크에 관한 14차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구체적인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목표(보험업무의 온라인방식 처리 비율 90% 이상, 보험 가입 자동 심사 비율 80% 이상, 온라인 고객 비율 60%, 온라인보험 제공 비율 50% 이상, 보험금 자동 심사 비율 40% 이상 등)를 제시함¹¹⁾

〈표 3〉 중국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

날짜	정책	세부내용
2020. 1	• 은행업과 보험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 보험회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와 비용 절감, 업무관리능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촉구
2020. 5	• 손해보험업무의 온라인화에 관한 지도의견	• 조건을 갖춘 보험회사가 보험 서비스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것을 권장
2020. 8	• 손해보험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3개년 계획(2020~2022)	• 손해보험회사가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디지털화, 온라인화, 지능화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촉구
2022. 1	• 은행업과 보험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지도의견	• 5가지 분야의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 항목을 제시해 금융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

자료:中国证券网(2022. 11), “中国保险业数字化转型的机遇、问题与对策”

-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일부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관련 외부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인민보험, 중국인수보험, 중국평안보험, 중국태평양보험 등 대형 보험회사들은 각각 인슈어테크 관련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이들을 통해 자사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 보험회사까지 디지털 인프라 조성, AI 기반의 서비스 제공,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 등 다양한 디지털 전환의 실행방안을 제공할 수 있음
 - 중국평안보험은 2008년부터 인슈어테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으며 현재 보유 중인 인슈어테크 관련 자회사는 디지털 은행과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는 원커넥트,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안헬스(구 '굿닥터'), 디지털 전환 관련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평안테크 등이 있음
 - 디지털 전환에 관한 관심이 있는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온라인플랫폼, 재보험회사 등 외부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내부 시스템 및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계 양관손해보험회사는 빅데이터, AI 이미지 식별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중국의 메신저인 WeChat을 통해 보험금 심사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병원 시스템과 연결해 보

11) 中国保险行业协会(2021. 12), “保险科技“十四五”发展规划”

험금 지급을 실행할 수 있음

- 대만계 Cathay손해보험회사는 자본금 확충을 주목적으로 앤트 파이낸셜의 투자를 받았으며 앤트 파이낸셜의 기술 강점을 활용해 IT 기술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 혁신, AI 기반의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30개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해 벤처투자자, 대학교, 신생기업들과 함께 '보험혁신연맹'을 설립함

- 대부분 중국 보험회사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성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맥킨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디지털 전환 전략 설계,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디지털 전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생각하는 중국 보험회사는 단 17%에 불과함¹²⁾

12) McKinsey & Company(2023. 1), “行穩致遠，打造中國數智化保險企業制勝策略”

4. 중국 보험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운용 현황

요 약

중국 보험회사는 채권, 주식, 자산유동화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직접 자산 운용하거나 투자관리회사에 위탁운용할 수 있음. 중국 감독당국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도 증가하였음.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관련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운용을 지원하고 있음

- 중국 보험회사는 채권, 주식, 자산유동화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직접 자산 운용하거나 투자관리회사에 위탁운용할 수 있음
 - 2022년 중국 보험자산관리협회(中国保险资产管理业协会)가 발표한 보고서¹³⁾에 따르면 2021년 보험회사의 총자산과 운용자산은 각각 2020년 23조 2,984억 위안, 21조 6,801억 위안에서 24조 8,874억 위안, 23조 2,280억 위안으로 증가함
 - 보험회사는 은행예금(현금·유동자산 포함), 채권, 금융상품에 67.7% 투자했으며, 전체 투자자산 중 채권은 56.23%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고, 주식은 23.1%로 전년 대비 1.4% 감소함
 -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 중 대형사는 금리채권·주식, 소형사는 신용채권·공모펀드에 대한 비중이 높고, 손해보험회사 중 대형사는 신용채권, 소형사는 은행예금에 대한 비중이 높음
 - 보험회사 지분투자(비상장회사 지분, 지분 투자펀드 및 지분 투자 계획 포함, 해외 지분 투자 데이터 제외) 규모는 1조 7,100억 위안으로 전체 투자자산의 7.9%를 차지함
 - 생명보험회사는 비상장회사 지분과 지분 투자펀드에 각각 47%, 42%를 투자하고, 손해보험회사는 비상장회사 지분에 53%를 투자함
 - 보험회사는 직접 투자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고, 특수관계인 보험자산관리회사, 비(非) 특수관계인 보험자산관리회사, 다른 업종의 투자관리회사에 위탁할 수도 있음
 - 특수관계인 보험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운용 규모는 69.6%를 차지하고, 직접 투자는 26.2%, 비(非) 특수관계인 보험자산관리회사는 0.7%, 다른 업종의 투자관리회사는 3.5%를 차지함
 - 2021년 33개 보험자산관리회사는 596건의 상품을 등록했으며, 등록 규모는 1조 2,833억 4,3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함
 - 투자상품 유형 중 채권이 8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산유동화는 6.2%, 주식은 2.4%, 사모펀드는 2.9%를 차지함

13) http://www.cbimc.cn/content/2022-08/15/content_466178.html

○ 중국 감독당국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도 증가하였음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22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보험자금 투자 확대 및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자산 리스크관리를 중심으로 한 규정을 발표함
 - 2022년 1월 발표한 《보험자금 운용 감독 보고사항 간소화에 관한 통지》는 국무원의 ‘放管服’(放管服: 정부 행정기능 간소화·서비스 개선)을 구현하고,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 2022년 4월 발표한 《보험자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통지》는 보험자산관리회사의 투자 결정 및 투자 후 관리업무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2022년 5월 발표한 《보험자금 위탁투자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보험그룹 자금운용 관련 거래 감독강화에 관한 통지》는 보험자금의 위탁투자 리스크 관리, 보험그룹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함
 - 2022년 7월 발표한 《보험자산관리회사 관리 규정》은 외국 자본 보험회사의 보험자산관리회사 지분 보유 비율에 대한 상한을 폐지하기로 함
- 2019년 8월부터 2022년 말까지 보험을 주축으로 한 자산유동화계획¹⁴⁾ 등록 건수는 총 134건, 누적 등록 규모는 약 5,435억 5,100만 위안¹⁵⁾을 기록함
 - 2019년 9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자산유동화계획 및 보험 사모펀드 등록에 관한 통지》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방식을 등록제(注册制)에서 등기제(登记制)로 변경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함
 - 이로 인해 등록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1년 대비 2022년 등록 건수와 규모는 각각 65건, 3,045억 2,9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78.5%, 106.2% 증가함(그림 4) 참조

〈그림 4〉 2019~2022년 보험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현황

(단위: 건, 억 위안)



자료: 중국 청신국제신용평가사(2023), “보험자산관리산업연구”

14) 자산유동화계획(資産支持計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대출 자산 등을 담보로 유동화 가능한 금융상품을 발행하도록 하고, 이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15) 각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최초 자산유동화계획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 시 승인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 유동화 기초 자산별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금융리스 자산이 7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 이후 22.8%로 감소함
 - 2022년 말 기준, 자산유동화 기초 자산 중 공급망 외상매출채권 매입¹⁶⁾ 채권 자산이 3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액 대출은 21.0%, 금융리스는 12.6%를 차지함
 - 유동화 기초 자산별 만기일은 부동산 공급망 프로젝트 상품 1년 이내, 금융리스 3년·5년, 부실채권 5년이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유동화 기초 자산의 90% 이상이 AAAsf 신용등급을 획득함
- 한편, 2023년 3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거래소에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업무 개시 지침(保险资产管理公司开展资产证券化业务指引)》, 이하, ‘업무지침’이라 함)을 제정하도록 안내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운용을 지원하고 있음¹⁷⁾
- 《업무지침》은 보험자산관리회사가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부동산투자신탁(REITs)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
 - 자산유동화증권(ABS) 업무 개시를 위해 보험자산관리회사는 건전한 지배구조, 완전한 업무 시스템, 적절한 부서와 인력 배치, 우수한 자산관리 역량을 갖춰야 함
 -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상하이·심천 거래소에 동시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칙 및 《업무지침》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함
 - 증권거래소는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부동산투자신탁(REITs) 업무에 대한 자율 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규제 수요에 따라 업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산유동화증권(ABS) 업무의 자유화는 보험자산관리회사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통해 투자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¹⁸⁾
 - 반면, 보험자산관리회사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경우, 표준화 업무인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요건이 높고, 이미 증권사와 기존 참여자들이 절대 우위에 있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발전과 규범을 동등하게 중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보험자산관리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부동산투자신탁(REITs)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할 예정임
 - 다른 유형의 우수한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증권(ABS)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진하고, 인프라 자산의 시장 유입 경로를 개방하여 기존 자산과 신규 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감독을 강화하여 활기찬 시장 생태계를 유지하고, 채권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임

16) 외상매출채권 매입(保理)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임

17) <http://www.csrc.gov.cn/csrc/c100028/c7202882/content.shtml>

18) <https://finance.sina.cn/2023-03-06/detail-imiywnsi9732744.d.html>

5. 싱가포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민영 의무의료보험 보장한도 확대 실시¹⁹⁾

요 약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은 높은 인구 비중을 가지며 경제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달리 공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민영 의무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함. 최근 의료비 상승과 같은 환경에서 싱가포르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의료보험 혜택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따라서 2023년 7월부터 의무의료보험의 보장한도는 기존 15,000싱가포르달러(약 1,500만 원)에서 60,000싱가포르달러(약 6,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임

○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 중 73%가 내국인이고, 나머지 27%가 싱가포르 체류 외국인(비거주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싱가포르 전체 인구는 약 545만 명이고 이 중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싱가포르 거주자²⁰⁾가 399만 명(약 73%)이고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비거주자(Non-Residents)가 147만 명(약 27%)임²¹⁾
- 싱가포르의 외국인은 취업비자(Work Permit)를 비롯한 다양한 사증을 통해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부양가족, 학생을 포함하는 아래 7개 그룹으로 구분됨

〈표 4〉 싱가포르 외국인(비거주자) 구성 및 비중

(단위: %)

구성	비중 (전체 외국인 내)
① 건설·조선해양·공정분야 취업비자 소지자	20
② 건설·조선해양·공정분야 외 취업비자 소지자	19
③ 시민권자·영주권자·취업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	18
④ 외국인 가사근로자	16
⑤ Employment Pass ¹⁾ 소지자	11
⑥ S Pass ²⁾ 소지자	11
⑦ 학생	4

주: 1) 고숙련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허가증임

2) 중간 수준의 숙련 기술을 가진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허가증임

자료: 싱가포르 국무총리실, 통계청, 내무부, 이민청, 노동부(2021. 9), "Population in brief"

19)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84194&Type=eDaily>

<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2023/0331-implementation-of-enhanced-medical-insurance-for-foreign-employees-to-better-support-employers>

20)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의미함

21) 싱가포르 국무총리실, 통계청, 내무부, 이민청, 노동부(2021. 9), "Population in brief"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달리 공적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민영 의무의료보험(Mandatory Medical Insurance; MI) 가입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싱가포르 내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보험제도(MediSave)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외국인 근로자는 민영 의무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동 제도는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업무 관련 장애나 사고 발생 시 의료서비스와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의무의료보험은 입원치료나 당일수술뿐만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서도 병원비를 보장해야 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민영 의무의료보험 가입주체는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보장한도액은 연간 최소 15,000싱가포르달러이나 최근 의료비 상승으로 한도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싱가포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이들을 위해 의무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없음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의료보험 가입 정보²²⁾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에 전송해야 하며 해당 절차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발급과 갱신이 이뤄짐
 -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15,000싱가포르달러로 책정된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싱가포르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의료보험 보장한도액을 연간 최소 60,000싱가포르달러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힘
 - 의무의료보험 한도 증액 조치가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비자 소지자, 외국인 가사근로자, S Pass 소지자이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증액된 보장범위로 의무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함
 - 단, Employment Pass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싱가포르 노동부에 따르면 의료비 청구액은 99% 이상이 6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임

- 한도 증액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액의 의료비가 청구될 경우 이에 대해 지불책임이 있는 사업주의 재정부담이 일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 제도 내에서는 의무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최소 15,000싱가포르달러로 설정되어 있기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는 사업주 부담임
 - 따라서 한도액이 최소 60,000싱가포르달러 이상으로 증액될 경우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불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22) 의무의료보험의 가입정보란 보험회사, 보험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증권 만료일 등에 관한 내용을 의미함

- 의무의료보험 한도 증액은 2023년 7월부터 적용되며 두 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무의료보험 한도 증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신규계약, 갱신계약, 연장계약에 모두 적용됨
 - 1단계 시행예정일(2023년 7월)에는 연간 15,000~60,000싱가포르달러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병원비 부과 시 보험회사가 이 같은 비용에 대해 사업주와 공동부담하는 안을 도입할 예정임
 - 공동부담금은 15,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의 보험금 청구금액에 대해 보험회사가 75%를 지불하고 나머지 25%는 사업주가 부담할 예정임
 - 2단계 시행예정일(2025년 7월)에는 의무의료보험에 관한 면책조항 표준화, 연령별 보험료 차별화, 보험금 청구접수 시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이 시행될 예정임
 -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발생 시 사업주가 먼저 병원으로 의료비를 선납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받지만, 변경된 안에 따라 사업주의 중간 개입 없이 보험회사가 직접 병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임

6.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은퇴 후 효율적 인출전략에 관한 정책 연구

요 약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은퇴 전 자산의 적립단계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제도 성숙에 따라 은퇴 후 인출단계(Drawdown phase)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호주 자산운용협회는 은퇴 후 기간에서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인출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소비자, 금융산업 및 정부의 변화를 촉구함

- 호주 퇴직연금제도가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따라 제도에 관한 논의가 기존의 은퇴 전 자산 적립단계에서 은퇴 후 자산 인출단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됨
 - 호주 퇴직연금제도는 1992년 법정 사용자부담금(Superannuation Guarantee; SG) 제도를 도입한 이래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자산축적단계에 초점을 두어왔으나 최근 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자산 인출단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호주 자산운용협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FSC)는 은퇴 후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인출전략에 초점을 둔 보고서²³⁾를 발표함
 - 호주 자산운용협회는 지속 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를 만들고자 금융분야 컨설팅 그룹인 NMG와 함께 ‘은퇴소득 정책 로드맵’ 보고서를 발표함
 - 해당 보고서는 은퇴 후 단계에서 효과적인 자산의 인출방식에 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구축을 통해 은퇴자는 은퇴기간에 필요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적정 수준의 은퇴자금 인출을 통해 생애주기에 맞는 소비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퇴직연금제도는 인출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자문 대한 제한된 접근성, 퇴직연금의 낮은 인출률과 높은 유산 비중, 은퇴상품의 저조한 가입률 등임
 - 호주는 금융자문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은퇴자만이 은퇴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향후 10년간 은퇴자의 1/3 이하만이 금융자문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대부분의 은퇴자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최소인출률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금액만을 인출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사망 시점에서 의도치 않게 유산금을 남기는 경우가 많음

23) FSC(2023. 4), “A roadmap for Australian Retirement Income Policy”

- 호주에서 은퇴상품 가입률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인데 이는 호객행위 금지원칙(Anti-hawking) 등에 따른 법과 제도적 장애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효율적인 인출전략이 마련될 경우 은퇴자는 은퇴기간 중 더 많은 소비를 집행할 수 있고 퇴직연금의 운용자산규모 또한 적정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순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음
- 퇴직연금 인출률을 높일 경우 은퇴자는 15~20% 정도의 추가적인 은퇴소득을 사용할 수 있음
 - 인출률을 높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Funds Under Management; FUM)이 2060년까지 12% 정도 줄어들 수 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은퇴자의 연금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줄일 수 있음
 -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은퇴자를 위해 사용되는 연금과 은퇴 전 단계에서 적립금으로 저축되는 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인출률을 높임으로써 은퇴자를 위한 연금이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예상치인 40%에서 3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음
 - 퇴직연금의 인출률을 높일 경우 소비가 늘고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퇴기간 내 발생하는 운용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공제 정도를 줄일 수 있음
- 이를 위해 소비자는 퇴직연금 내 축적된 자산을 부의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은퇴 후 소비를 위한 지출의 도구로써 사고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호주 일반 소비자는 퇴직연금을 저축의 도구로 여기고 소비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 재설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 ‘잔액’보다는 ‘인출’에 초점을 두는 보고서 작성방식을 채택해야 함
 - 퇴직연금 수탁자는 소비자를 위한 퇴직연금 정보 제공 시 ‘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인출자금의 적정수준과 지속정도에 초점을 둔 보고서 작성방식을 택해야 함
 - 소비자는 최소인출률을 은퇴소비를 위한 기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시 특정 연령까지 소진해야 하는 목표 인출률을 제시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시장변동에 따라 최소인출률이 축소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은 최대한 지양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는 은퇴이후 시기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보수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정부는 은퇴 관련 금융자문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 기회를 모색해야 함
 - 호주정부는 은퇴 후 소득기반으로써 퇴직연금 외에도 노령연금이나 건강관련 보조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금융산업은 은퇴시장 혁신에 장애가 되는 제약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특히 레거시 금융상품²⁴⁾ 최소화, 은퇴상품에 관한 자본규제 재검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공개 내용에서 변화가 필요함
 - 레거시 금융상품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상품 청산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가능한 범위에서 정부지원책을 고려해야 함
 - 정부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레거시 상품 가입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계는 상품 청산 시 퇴직연금 펀드 내 이전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은퇴상품 관련 자본규제를 재검토하고 혁신 상품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장수 관련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율 적용에 있어 현실화가 필요함
 - 호주는 장수 관련 금융상품에 대해 100%의 해지율을 적용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Solvency II)이 40%인 것과 비교할 때 보다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은퇴상품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상품 특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구조 개선이 필요함

- 정부는 상호연관된 은퇴 관련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연금 수급기준 재설계, 고령 근로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기타 세금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은퇴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소비를 높일 수 있도록 호주정부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한 자산기준을 재설계해야 함
 - 노령연금 수급은 은퇴에 필요한 저축액이 충분히 마련된 개인보다는 재원이 부족한 개인에게 우선 지급된다는 원칙을 강조해야 함
 - 은퇴시점을 연기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더 많은 사회보장혜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령의 근로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함
 - 노령연금을 수급받는 고령의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패널티를 줄이거나 은퇴 이후 근로하며 기여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공동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은퇴 후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정책, 주택담보자산에 관한 정책, 노령 및 건강 관련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개인의 은퇴재원 마련에 관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함

24) 퇴출상품, 상품제공자의 시장 퇴출 상황, 소비자의 불충분한 가입 등으로 지속적인 판매가 어려운 금융상품 등을 의미함

II

복미

1. 미국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비상사태 및 국가 비상사태 종료

요 약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연방 정부는 다양한 건강보험 영역에서 유연성을 제고하였음.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는 두 비상사태를 모두 5월 11일에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종료 시 주요 보건 정책은 다소 변경됨. 연방 정부의 백신·의약품 공급이 고갈되는 경우 두 비상사태 종료와 맞물려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에 행정부는 의회가 백신·의약품에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함

-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음¹⁾
 - 공중 보건 비상사태는 선포 시 90일 동안 지속되며, 추가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갱신이 필수적임
 - 코로나19에 의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는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며, 가장 최근 갱신은 2023년 2월이었음
 - 국가 비상사태는 ① 대통령이 종료하는 경우, ② 의회 합동 의결을 거쳐 종료하는 경우, ③ 대통령이 갱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듬해에도 효력이 있음
 - 2021년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였음
- 두 가지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민영건강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보험 영역에서 보장범위 확대 등의 방식으로 유연성을 제고하였음²⁾³⁾

1)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국가 비상사태는 각각 2020년 1월 공중보건법 제2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2020년 3월 국가 비상사태법 제201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선포되었음

2) 확대 또는 제고된 사항에는 대표적으로 ① 코로나19 검사·치료 및 백신 접종에 대한 보장범위, 비용 및 지불, ②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 및 연방 메디케이드 매칭률(Federal Medicaid Matching Rate), ③ 원격 의료, ④ 메디케이드 및 CHIP 유연성, ⑤ 메디케어 지불 및 보장범위 유연성, ⑥ 민영건강보험 보장범위 유연성이 있음

3) Kaiser Family Foundation(2023. 1. 31), "What Happens When COVID-19 Emergency Declarations End? Implications

○ 국가 비상사태와 공중 보건 비상사태는 각각 2023년 3월 1일, 4월 1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월 공중 보건 비상사태 및 국가 비상사태 모두에 대해 5월 11일까지 연장한 뒤 이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였음⁴⁾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선포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법안 H.R.382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된 공동 결의안 H.J.Res.7이 모두 통과되었으나, 두 법안에서 고려한 방식으로 비상사태 종료 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부는 5월 11일까지 연장함
 - 바이든 행정부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갑작스럽게 종료될 경우, 보건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연달아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인 42호(Title 42)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이민자 유입이 초래되며 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힘
- 단, 5월 11일까지 두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해서 ① 마스크 착용 의무 및 백신 접종 의무, ② 학교 및 사업 운영 제한, ③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 요구 등과 같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개별 행동 제한 사항이 부과되는 것은 아님

○ 2023년 5월 11일 두 가지 비상사태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일부 주요 보건 정책은 유지되는 한편, 변경되는 보건 정책 또한 다수 존재함(〈표 1〉 참조)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두 가지 비상사태 외에 선포된 여러 비상사태의 종료가 두 가지 비상사태 종료와는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부 주요 보건 정책은 유지됨
 - 2020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별도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⁵⁾ 이는 두 가지 비상사태 종료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함
 - 2020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코로나19 의료 대응 조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책임 면제에 관한 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⁶⁾ 사항들의 종료일은 대부분 2024년 10월 1일로 설정되었음

for Coverage, Costs, and Access”

4) White House(2023. 1. 30), “H.R.382 – A bill to terminate the public health emergency declared with respect to COVID-19, H.J.Res.7 – A joint resolution relating to a national emergency declared by the President on March 13, 2020”

5) 해당 공중 보건 비상사태는 연방식품및의약품법 제564조에 따라 선포되었음

6) 해당 선언문은 공공및비상사태준비법(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 PREP Act)에 따라 발표되었음

〈표 1〉 두 가지 비상사태 종료 이후 주요 보건 정책의 유지 사항 및 변경 사항¹⁾²⁾

주요 보건 정책	유지 사항	변경 사항
백신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보장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함 • 연방에서 구매한 백신을 제공하는 자는 환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음 	없음
자가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미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자가 검진에 대해 본인이 전액 지불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미가입자 및 취약계층은 기존과 같이 무료 진료소, 지역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케어 가입자 및 임시 메디케이드 보장 옵션을 지닌 보험 미가입자는 더 이상 무료 자가 검진을 받을 수 없음 • 민영건강보험 및 메디케어어드밴티지 가입자 또한 더 이상 무료 자가 검진을 받을 수 없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무료 자가 검진을 보장받을 수도 있음 •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2024년 9월까지만 무료 자가 검진이 보장되며, 이후에는 주에 따라 보장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음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미가입자는 무료 진료소, 지역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검사 자체에 대한 비용은 없지만 진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음 • 민영건강보험 및 메디케어어드밴티지 가입자의 경우 계약에 따라 검사 및 진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음 •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2024년 9월까지만 무료 검사가 보장되며, 이후에는 주에 따라 검사 수를 제한하거나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음 • 임시 메디케이드 보장 옵션을 지닌 보험 미가입자는 더 이상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없음
코로나19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정부가 구매한 모든 의약품은 보험 보장범위와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2023년 5월 11일 이후 특정 의약품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음 • 메디케이드 및 CHIP 가입자는 2024년 9월까지 무료 의약품 치료가 보장되며, 이후에는 주에 따라 비용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음

〈표 1〉 계속

주요 보건 정책	유지 사항	변경 사항
원격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케어 가입자를 위한 확대된 원격 의료서비스는 법안 H.R.2617에 의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됨 •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서는 연방의 승인 없이 원격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5월 11일 이후부터는 통제물질에 대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내원해야 함 • 다른 주에서 원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일부 주 면허 요건들이 주에서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준으로 돌아올 수도 있음 • 연방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거나 처벌받을 수도 있음

주: 1) 연방 정부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는 백신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종료 여부가 아닌 연방 정부에서 구매한 백신의 양에 따라 결정되며, 연방 정부의 백신 공급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백신 가격이 인상될 수 있음

2) 연방 정부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는 의약품 또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종료 여부가 아닌 연방 정부에서 구매한 의약품의 양에 따라 결정됨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3. 5. 5), "End of the Federal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PHE) Declar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2023. 4. 11), "What the End of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Means for Your Health Insurance Coverage"; Kaiser Family Foundation (2023. 2. 3), "The End of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Details on Health Coverage and Access"

○ 대다수의 미국인이 비용상의 이유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놓치기에 연방 정부의 무료 백신 및 의약품 공급이 고갈되는 경우, 두 가지 비상사태 종료와 맞물려 광범위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백신 및 의약품에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함

- 국민건강설문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성인 중 8.6%는 비용상의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받지 못하였음
- Kaiser Family Foundation이 실시한 2022년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43%가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비용상의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고 미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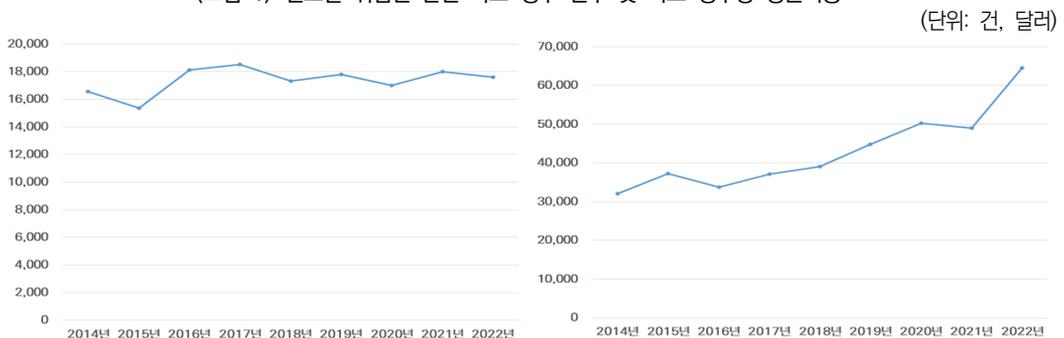
2. 미국 견종특정법 및 견종 목록을 둘러싼 논쟁

요 약

미국 내 위험건 관련 사고 보험금 청구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과거부터 일부 주택보험회사는 견종 목록을 바탕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함으로써 비용 증가를 통제해 왔음. 견종 목록은 1980년대 초 견종특정법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시각적 식별법을 통해 견종 목록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꾸준히 반발돼 왔음. 2022년 11월 18일 전미보험업법자협의회는 보험회사가 견종 목록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모델법 채택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음

- 미국 내 위험건 관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과거부터 일부 주택보험회사는 견종 목록을 바탕으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특정 견종에 대한 자택 소유자 및 임차인 책임 보험 가입을 거절함으로써 비용 증가를 통제해 왔음
 - 2014~2022년 기간 동안 위험건 관련 사고 보험금 청구 건수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동 기간 중 위험건 관련 사고 보험금 청구당 평균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그림 1) 참조)
 - 보험회사는 리스크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 및 관련 예상 손실에 따라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며, 견종 목록을 바탕으로 특정 견종에 대해 책임 보험 가입을 거절함
 - 미국손해보험협회(American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Association; APCIA)를 포함한 보험협회들 또한 견종 목록을 통한 책임 보험 가입 거절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임⁷⁾
 - 대표적으로 주택보험회사에 의해 거절되는 견종은 핏불, 로트와일러, 도베르만 핀셔이며, 그 외 견종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따라 거절 여부가 다르게 나타남(표 2) 참조)

〈그림 1〉 연도별 위험건 관련 사고 청구 건수 및 사고 청구당 평균비용¹⁾²⁾



주: 1) 대표적인 위험건 관련 사고에는 개 물림 사고, 개에 의한 골절 및 둔기 외상 부상이 있음

2) 2021년과 2022년 수치는 예상치임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https://www.iii.org/table-archive/97558>)

7) Claims Journal(2021. 6. 21), "Activists Say Racist Legacy Tainting Insurer Attitudes Toward 'Dangerous' Dog Breeds"

- 견종별 공격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던 시기, 대부분의 연구가 시각적 식별법을 통해 견종을 식별했다는 점에서 동물 복지 및 법률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견종특정법 및 견종 목록에 대해 반대해 왔음
- 동물 복지 및 법률 단체는 주로 시각적 식별법을 통한 견종의 식별이 명확하지 않고, 견종과 특정 부정적 행동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험통계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견종보다는 개의 개별 이력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견종특정법 및 견종 목록에 반대하고 있음(〈표 3〉 참조)

〈표 3〉 기관 또는 단체별 견종특정법 및 견종 목록에 대한 반대 의견

입장	기관 또는 단체	의견
반대	Best Friends Animal Society	• 견종 목록은 신뢰할 수 있는 계리 데이터 없이 작성되었으며, 견종과 유효한 리스크 사이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음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	• 견종특정법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증거가 없음 • 책임감 있는 반려견 보호자와 잘 사회화된 개를 오히려 부당한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음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HSUS)	• 견종특정법이 사람에 대한 공격을 줄임으로써 더 효과적인 통제와 공공 안전 계획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음 • 견종특정법은 과학이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신화나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함
	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 견종특정법은 절차에 관한 문제, 규제 및 금지될 개의 식별에 관한 문제, 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함
	미국수의학협회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	• 견종특정법은 개에게 물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거나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님 • 견종특정법은 견종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시행하기 어려움 • 견종특정법은 책임감 있는 반려견 보호자와 그들의 개를 차별함 • 견종특정법에 주로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인 번식 금지는 무책임한 반려동물 소유라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지 않음 • 견종별로 보고된 수치를 신뢰할 수 없음
Maddie's Fund	• 시각적 식별법을 통한 견종 분류는 신뢰할 수 없음 • 개별 개의 안전성은 견종이 아닌 성격, 이력 등을 포함한 개의 특성을 살펴볼 때 가장 잘 평가됨	

자료: Best Friends(2020. 11), "Breed Discrimination in the Homeowners Insurance Industry"; ASPCA(<https://www.aspc.org/about-us/aspc-policy-and-position-statements/position-statement-breed-specific-legislation>); HSUS(<https://www.humanesociety.org/resources/all-dogs-are-equal>); National Canine Research Council(2012. 8. 8), "American Bar Association(ABA) Urges Repeal Of All Breed-Specific Laws"; AVMA(<https://www.avma.org/resources/pet-owners/why-breed-specific-legislation-not-answer>); Maddie's Fund(2012. 2), "Incorrect Breed Identification"

- 2022년 11월 18일 전미보험입법자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Legislators; NCOIL)는 보험회사가 책임 보험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견종 목록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모델법 채택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음
 - NCOIL의 모델법 채택은 ① 견종 목록을 통한 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의 한 형태였기에 보다 포괄적인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 ② 모델법을 채택하는 모든 주에서 포기되는 반려견의 입양 및 분양의 수가 감소할 것, ③ 개와 관련된 법과 정책이 보다 과학에 기반을 두게 될 것 등의 의의가 있음
 - 최근의 DNA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8가지 행동 요인에 대해 단 9%만이 견종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견종은 개의 행동 예측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⁹⁾

9) Science(2022. 4. 29), "Ancestry-inclusive dog genomics challenges popular breed stereotypes"



유럽

1. EU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금지 규제 완화

요 약

EU 집행위원회는 RIS 채택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온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제외함. 유럽 내에서 MiFID II 제정과 함께 판매수수료 전면 금지 시행에 대한 압박은 거세져 왔음. 독일 재무부와 금융업계는 금융상품 접근성 저해를 우려하여 전면 금지에 반대하였으나 소비자보호단체는 전면 금지에 찬성하였음.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는 수수료 규제를 통해 개인 투자의 활성화와 금융상품 설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소매투자전략(Retail Investment Strategy, 이하, 'RIS'라 함) 채택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온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을 우선 제외함¹⁾
 - EU 집행위원회는 5월 24일 발표한 RIS 제안서에서 수수료 전면 금지가 금융상품 판매 채널에 갑작스러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수수료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제외할 것을 밝힘
 - RIS는 2020 자본시장연합실행계획(2020 Capital Markets Union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개인 투자자가 투자 목적과 부합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데 그 목표가 있음
 - 다만 집행위원회는 향후 RIS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전략 채택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비자가 수수료 규제에 의해 피해받고 있다면 수수료 전면 금지에 대해 다시 고려할 예정임
- 유럽 내에서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 이하 MiFID II) 제정과 함께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전면 금지에 대한 압박은 거세져 옴
 - 수수료 제공은 2018년 시행된 MiFID II에 따라 엄격한 조건하에서 허용됐으나 2022년 MiFID II 개정 과정에서 수수료 전면 금지 시행에 대한 유럽 차원의 압박이 거세짐²⁾

1) EUROPEAN COMMISSION(2023),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EU) 2009/65/EC, 2009/138/EC, 2011/61/EU, 2014/65/EU and (EU) 2016/97 as regards the Union retail investor protection rules

- MiFID II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사와 금융회사 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독립적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전면 금지되었으나 제한된 자문(Restricted advice)은 허용되었음³⁾
- 메이어드 맥기네스(Maieard McGuinness) EU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 위원은 판매수수료가 있는 금융상품의 가격이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평균 35% 정도 높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금융상품 설계 단계에서 판매수수료 설정으로 인해 ETF와 같은 저가격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낮아지는 반면 고가격 금융상품으로의 구매 유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이와 관련되어 독일 재무부는 판매수수료 금지 규제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금융업계는 소액투자자의 금융상품 접근성 저해에 대해 우려하였음

- 독일 연방 재무부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는 보험상품 부문에서 판매수수료로 인해 소비자는 노후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판매수수료 금지 규제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냄⁴⁾
 - 또한 독일은 은행, 보험회사 등에서 약 30만 명의 설계사가 종사하고 있어 판매수수료 금지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함
- 유럽 보험협회(Insurance Europe)도 수수료 체계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지닌 보험산업과 불가결의 관계임을 강조하며 판매수수료 금지 규제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함⁵⁾
- 독일 저축은행협회(Deutsch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대변인 위브케 슈바르츠(Wiebke Schwarz)는 판매수수료 금지로 인해 소액투자자의 금융상품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함⁶⁾
 - 현 체계는 투자 금액에 따라 설계사에게 수수료가 차등으로 지급되나 만약 수수료 지급방식이 정액 지급으로 변경된다면 소액투자자의 부담이 커져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이 저해될 수 있음

○ 반면 소비자보호단체는 금융상품 판매수수료가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수익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근거로 수수료 금지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음

- 연방 소비자보호단체(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는 수수료 체계가 금융상품 설계사에게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것을 근거로 판매수수료 금지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임⁷⁾

2) Ernst and Young(2023), "Inducement ban - Forewarned is forearmed"

3) 독립적인 자문은 특정 금융회사에 속해있지 않은 설계사가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의 자문이고, 제한된 자문은 특정 금융회사에 속한 설계사가 소속 회사의 상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의 자문임

4) Handelsblatt(2023), "Finanzminister Christian Lindner warnt EU vor Provisionsverbot"

5) Insurance Europe(2023), "Position on inducements"

6) Handelsblatt(2023), "Finanzbranche fürchtet EU-Provisionsverbot"

7) Verbraucherzentrale(2023), "Provisionsverbot: Damit Beratung drin ist, wo Beratung draufsteht"

- Steffen et al.(2023)은 금융상품 판매수수료를 금지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수수료가 금지된 국가의 가계 투자 수익률이 1.7%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음⁸⁾

○ EU 국가 중 네덜란드는 금융상품 판매수수료를 금지한 바 있으며, 이는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설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음⁹⁾

- 네덜란드에서는 2014년부터 금융상품 판매수수료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보수는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보다 적합한 금융투자 상품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상품 가격의 하락과 함께 동 상품의 판매가 장려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해당 조치의 효과는 각국의 시장구조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을 유통하는 국가의 경우 판매수수료 금지로 판매 유인책이 사라져 소비자의 상품 구매 폭이 좁아질 수 있음

8) Steffen S, Noth Land Grafe A(2023), "The Effect of Commission Bans on Household Wealth: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9) ESMA(2020), "ESMA's Technical Advice to the Commission on the impact of the inducements and costs and charges disclosure requirements under MiFID II"

2. 유럽 손해보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조치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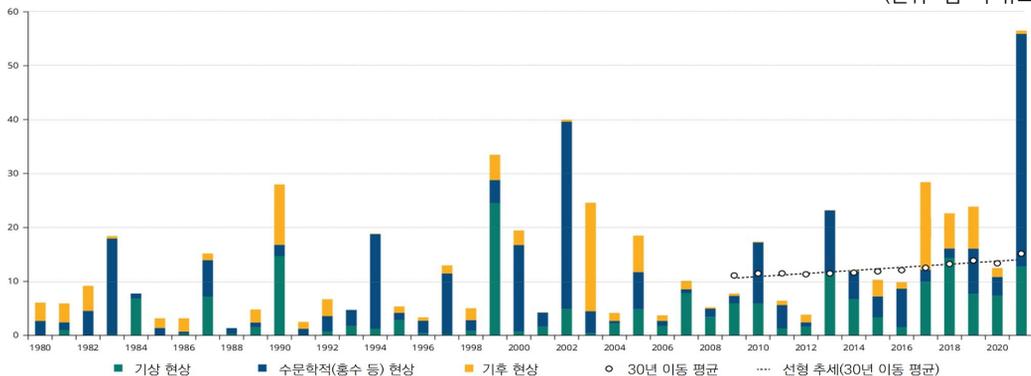
유럽 전역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상당한 보장격차가 존재함. 이에 대한 EIOPA의 파일럿 테스트 결과 손해보험 산업은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 조치가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손해보험산업은 기후변화 적응 조치가 포함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보험산업은 보험계약자 인식 부족, 기후변화 적응 조치 일반화의 한계, 부족한 재정 유인책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 적응 조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유럽 전역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했지만 손실 중 23%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보장격차(Protection Gap)가 존재함

- 2016년 이탈리아 중부 지진, 2019년 이탈리아 홍수, 2021년 독일 홍수는 유럽 경제 지역(EEA) 모든 손인(Peril)을 고려한 총 무보험 손실 중 각각 22%, 11%, 12%를 차지함¹⁰⁾
 - 자연재해가 일어난 이탈리아 및 독일의 보험 침투도는 매우 낮았으며, 총 발생한 손실의 98%, 97%, 78%가 무보험 상태였음
- 세계기후특성(WWA)과 독일 기상청의 공동 연구 결과 19세기 말부터 상승한 지구 평균 온도로 인해 폭우 확률이 1.2배에서 9배로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지진 제외)의 발생은 연관되어 있음¹¹⁾
 - 기후변화의 현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인해 보험 보장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EU 회원국의 기후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단위: 십 억 유로)



자료: European Environment Agency(2023), "Economic losses from climate-related extremes in Europe(8th EAP)"

10) EIOPA(2022), "Dashboard on insurance protection gap for natural catastrophes in a nutshell"

11) World Weather Attribution(2021), "Rapid attribution of heavy rainfall events leading to the severe flooding in Western Europe during July 2021"

- 이에 EIOPA는 손해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과정 내 기후변화 적응 조치(Climature change adaptation measure)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함¹²⁾
 - EIOPA는 2023년 유럽 보험회사가 위험 인수 과정에서 기후 변화가 사회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임팩트 언더라이팅(Impact Underwriting)’¹³⁾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주로 위험인수 과정에서 이뤄지는 손해보험회사의 기후변화 적응¹⁴⁾조치(기상 경보 시스템 설치, 내열성 자재 사용 등)에 대해 다룸
 - 이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EIOPA는 EU 14개국 3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유럽 손해보험 산업은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 조치가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EIOPA의 설문조사 결과 손해보험 산업 분야 내에서 재산 보험이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음으로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이 취약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 또한 물리적 위험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노출됐으나 2024년 기업지속 가능성보고지침(CSRD)¹⁵⁾ 시행에 따라 잠재적인 손해를 상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약 70%의 보험회사는 기후변화 적응 조치가 보험상품의 경제성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약 50%의 보험회사가 적응 조치가 포함되었거나 보험계약자의 적응 조치 이행을 장려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밝힘
 - 이에 대한 예시는 ‘전용 위험 평가(Dedicated risk assessment)’가 재물보험 보험료에 포함된 경우로, 단독주택 등 부모 물건을 90분 동안 외부 전문가와 함께 평가하는 시스템임
 - 전용 위험 평가의 목적은 보험계약자에게 부모 물건이 어떤 기후 관련 위험(홍수 등)에 노출되어 있는지 각인시키고 동 위험 노출도를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있으며, 동 평가로 인해 보험금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더불어 유럽 홍수인식시스템(EFAS), 코르페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 등 고도의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우려될 경우 앱을 통해 부모 물건에 대한 개별 솔루션을 제공함
 - 다수의 보험회사는 동 시스템의 유의미성을 강조했으나, 위험 예방은 보험계약자의 빠른 대처에 달려 있어, 경고 시스템이 보험금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함

12) EIOPA(2023), “IMPACT UNDERWRITING”

13) ‘임팩트 언더라이팅(Impact Underwriting)’은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와 동일한 맥락의 단어로, 임팩트 투자란 재무적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 및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함

14)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은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나눌 수 있음. 완화를 지구온난화 현상을 저감시키는 조치를 의미하며 적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위험요소(자연적·인위적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조절함으로써 피해를 저감시키는 것을 의미함

15) 기업지속 가능성보고지침(CSRD) 시행에 따라 역내 기업은 지속 가능성 관련 공시를 이행해야 하며 적용대상 기업은 2026년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허위 공시 등 지침 이행과정에서 기업의 법적 위험(Legal risk)이 확대될 수 있음

- 설문조사에 참가한 한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녹화 지붕(Greening roof)을 설치할 시 재산보험료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함
 - 보험계약자는 녹화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녹화 지붕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건물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 다른 손해보험회사는 지수형 보험의 일종인 산호초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산호초 보험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임계값을 넘는 풍속에 의해 산호초가 피해를 입을 시 이에 대한 복원을 지원하는 상품임
 - 산호초 보험은 산호초 복원을 보장하여 해안선 침식 범람, 해일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인식 부족, 기후변화 적응 조치 일반화의 한계, 동 조치의 높은 초기 비용과 부족한 재정 유인책 등으로 보험산업이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간은 기후변화의 단기적인 영향보다 장기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연재해 관련 피해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기후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인식이 부족함¹⁶⁾
 - 그러나 기후변화는 관련 손실 사건의 빈도와 심도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응대책의 강화는 향후 사회 전체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부보 물건마다 노출된 실질적 위험이 상이하므로 앞서 표준화된 보험계약이 기후 변화 적응 조치를 일반적으로 포함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
 - 부보 물건은 공간적 특징(예: 사고 다발 지역까지의 거리), 기후 복원력 측면에서의 물리적 조건(예: 내열성 소재 사용 등), 적응대책(예: 경보 시스템 사용 시 관리자의 상호작용 여부 등)의 효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적응 조치의 적용 조건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후변화 적응 조치의 높은 초기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재정 유인책이 부족함
 - 실제로 유럽 소수의 보험회사만이 보험계약자의 기후변화 적응 조치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산업은 보험계약자의 기후변화 적응 조치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 제공 등이 효과적인 재정적 유인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16) Frondel M, Simora M and Sommer S (2017), "Risk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Empirical Evidence for Germany, Ecological Economics", Vol. 137, pp. 173~183

3. 유럽 사이버보험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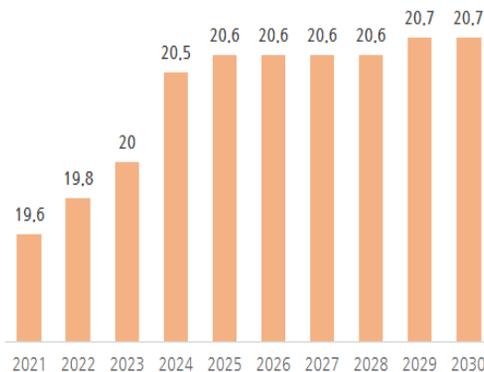
요 약

유럽의 사이버보험 시장은 높은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으나, 최근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음. 이에 유럽 보험시장에서는 사이버위험 부보가능성, 보장범위 및 상품 경쟁력 측면에서 사이버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보험산업은 상호보험 회사 설립, 보험연계증권 활용 등 비전통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 유럽의 사이버보험 시장은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최근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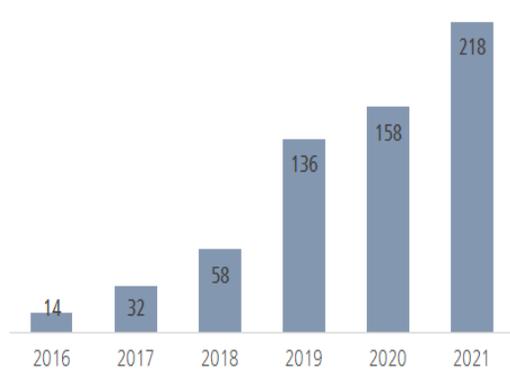
- 유럽은 사이버보험 선진 시장인 미국에 비해 사이버보험 성숙도가 높지 않은 시장인 만큼 2020~2030년의 기간 동안 매년 20%가량의 고성장이 전망됨(〈그림 2〉 참조)
 - 사이버보험은 유럽과 같은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큰 성장이 기대되는 보험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음¹⁷⁾
- 그러나, 최근 랜섬웨어 공격 등 대재해(Catastrophic) 특성을 가진 사이버위험(Tail risk) 증가로 유럽 지역 사이버보험 손해율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고, 유럽 보험회사는 사이버위험 보장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추세임
 - Marsh의 유럽지역 사이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건수가 2020년 대비 2021년 약 38% 증가함(〈그림 3〉 참조)

〈그림 2〉 유럽 사이버보험 시장 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Statista(2022), "Forecast of European cyber insurance market annual growth rates from 2020 to 2030"

〈그림 3〉 유럽지역 사이버보험 보험금 청구 건수
(단위: 건)



자료: Marsh(2022), "The Changing Face of Cyber Claims 2022: A cyber insurance loss study in continental Europe"

17) Insurance ERM(2023. 1), "Specialty cyber insurers poised for growth after Royal Mail attack"

○ 따라서 유럽 보험시장에서는 사이버보험의 사이버위험 부보가능성, 보장범위 및 상품 경쟁력 측면에서 사이버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2022년 12월 스위스 Zurich 보험그룹 대표는 사이버위험은 앞으로 부보불가능(Uninsurable)한 영역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사이버보험을 통한 사이버위험 보장의 불확실성을 시사함¹⁸⁾
- 2022년 9월 Lloyd's London은 2023년 3월 시점부터 판매·갱신되는 사이버보험 증권에 국가 배후(State-backed) 사이버 공격이 면책 조항에 포함될 것을 발표하였고, 이후 보험산업 내에서 이에 대한 찬반 대립이 지속됨¹⁹⁾
 - Lloyd's London은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을 '전쟁'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이버보험의 '전쟁' 면책 조항에 명확성(Clarity)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은 보험회사가 흡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위험이라고 판단함
 - 반대 입장은 해당 면책 적용은 기업을 보장 공백에 놓이게 하고 사이버 위험관리를 위한 특별한 대안 없는 기업의 경우 축소된 보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향후 잠재적 역선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2023년 2월 유럽 사이버보안기관협회(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보고서에 따르면 보장은 축소되고 보험료는 상승하는 현상 가운데 사이버보험의 매력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실무자들은 보험 대신 다른 위험관리 상품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²⁰⁾

○ 유럽 보험산업은 사이버보험의 한계(부보가능성, 상품 경쟁력, 보장범위)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보험 회사 설립, 보험연계증권(Insurance-Linked Securities; ILS)²¹⁾ 활용 등 비전통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 유럽 전역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사이버 공격 위험과 이에 따른 시스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영리 상호보험사 Miris Insurance를 설립하였고, 2022년 12월 벨기에 정부로부터 영업 면허를 받아 2023년 1월부터 약 12개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함²²⁾
- 보험연계증권(ILS)의 실제 활용 사례는 사이버 대재해 보장에 대한 향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보험시장이 위험 수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됨²³⁾
 - 영국계 보험그룹 Beazley는 2023년 1월 3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이버 손실에 대해 약 4,500만 달러

18) FT(2022. 12), "Cyber attacks set to become 'uninsurable', says Zurich chief"

19) FT(2023. 3), "Lloyd's of London battles insurers over 'state-backed' cyber attacks"; FT(2023. 4), "Bank of America warns Lloyd's over state-backed cyber attack exclusion"; FT(2023. 5), "Risk managers warn cyber insurance could become 'unviable product'"

20) ENISA(2023. 2), "Demand Side of Cyber Insurance in the EU: Analysis of Challenges and Perspectives of OESs"

21) 보험회사가 보유한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유가증권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연계증권에 투자된 자본을 확보하게 되고 투자자들은 평소 일정 수익(보험료)을 받는 대신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해줄 의무를 지게 됨

22) Reuters(2022. 12), "Cyber mutual insurer Miris gets Belgian license"; <https://www.miris-insurance.com>

23) Fitch Ratings(2023. 1), "Recent ILS Cyber Bond Issuance Encouraging for (Re)Insurers"

- 까지 보장하는 비비례재보험 연계 채권 계약을 체결함
- 독일계 재보험그룹 Hannover Re는 1억 달러 한도의 Quota share 담보부 재보험 계약(Collateralized reinsurance deal)을 체결함
 - 다만, 상호보험회사 설립 및 ILS 발행 등 사이버위험 보장을 위한 대안적 방법의 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향후 상호보험회사의 역할의 중요성 및 자본시장에서의 ILS 가치가 입증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보험산업의 노력이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모델링 개선, 사이버보험증권 용어 명확화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할 것임²⁴⁾

24) Swiss Re(2022. 11), "Cyber insurance: strengthening resilience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4. 영국 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정책: 디폴트옵션 도입과 현금성 자산 투자 경고²⁵⁾

요 약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개인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최종 정책결정문을 발표함. 주 내용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했던 디폴트옵션을 개인연금에도 도입하고, 연금 적립금의 상당액을 현금성 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경고를 보내 수익성 있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동 정책을 통해 개인 연금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노후 자산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22년 12월 개인연금(Non-workplace pensions)²⁶⁾ 디폴트옵션 도입 및 현금성 자산 투자 경고 정책에 대한 최종 규칙과 결정문을 발표함
 - 정책의 주 내용은 ①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도입했던 디폴트옵션을 개인연금에도 도입하는 것과 ②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금성 투자(Cash-like investment)에 대한 경고(Warning)를 통해 개인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임
 - 정책의 대상은 개인연금 가입자로서 퇴직연금 제도에서 제외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뿐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자 중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로 사적연금에 가입한 직장 가입자도 포함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개인연금 시장 내 경쟁 유인 약화, 개인연금 가입자의 자산관리 전문성 및 관심 결여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관계자 협의 및 피드백 수렴 등을 거쳐 동 정책을 도입함
 - 개인연금 제도 내 저조한 소비자 참여, 연금 상품 구조의 복잡성 등 수요 측면의 약점(Demand-side weakness)으로 인해 연금 사업자가 개인연금 소비자에게 더 나은 상품과 가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장 경쟁 유인이 약화함
 - 개인연금 가입자 중 투자자문을 받지 않은 가입자(Non-advised consumers)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산관리 전문성 및 관심이 부족한 가입자는 개인연금 투자현황 검토, 운용 지시 등 복잡한 투자 과정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개인연금 가입 후 투자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만 계좌를 유지한 경우, 낮은 수익성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됨

25) FCA(2022. 12), "Policy Statement 22/15: Improving outcomes in non-workplace pensions - feedback on CP21/32 and our final rules and guidance"

26)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Workplace pensions)을 제외한 개인연금에 해당하며, 직장인 가입자가 아닌 이들을 위한 개인연금 IPP(Individual Personal Pension)와 개인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운용할 수 있는 개인 투자형 연금 SIPP(Self Invested Personal Pension) 등이 포함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8년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 보고서 발표, 2019년 논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 수렴, 2021년 정책안을 발표한 뒤 2022년 정책안에 대한 관계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 규칙과 정책결정문을 제시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개인연금 디폴트옵션의 최종 규칙으로 정함(표 1) 참조)
- 개인연금 사업자가 투자자문을 받지 않은 개인연금 가입자²⁷⁾에게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여러 투자 옵션 제공 시 오히려 가입자의 투자 결정 과정에 복잡성을 증대시켜 저조한 소비자 참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디폴트옵션 제시 시점은 개인연금 가입 시점이 가장 효과적이며, 만약 가입 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후 투자 결정 시점에 다른 투자 옵션보다 디폴트옵션을 부각하여 제시해야 함
 - 개인연금 사업자는 '디폴트옵션'이라는 명칭 대신 소비자가 디폴트옵션과 그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품 이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2021년 정책안에서 디폴트옵션 설계 시 생애주기(Life-styling)를 필수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으나, 최종 규칙에서는 개인연금 사업자 판단에 따라 타깃마켓에 따른 생애주기 요소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등 디폴트옵션 설계에 대한 유연성을 시장에 부여함
 - 개인연금 판매자는 최소 3년마다 디폴트옵션의 투자 성과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새로운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입자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개인연금 적립금 중 상당 부분을 오랜 기간 현금성 투자로만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경고(Cash warnings)를 보내어 보다 수익성 있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현금성 투자 경고 운영의 최종 규칙으로 정함(표 1) 참조)
- 현금성 자산 투자 경고는 전체 개인연금 적립액의 25% 또는 1,000파운드 이상이 6개월 이상 현금성 자산으로 투자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개인연금 사업자는 현금성 자산 투자 경고와 함께 현금성 자산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옵션(디폴트 옵션 포함)이 있다는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가 투자자문을 받도록 유도할 수 있음
 - 개인연금 사업자는 연금 수급 기준연령(Normal minimum pension age) 도달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가입자에게는 현금성 투자에 대한 경고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함
 - 현금성 자산 보유에 대한 평가(Assessments of cash holdings)는 2021년 정책안에서 제시한 대로 3개월로 정하고, 사업자가 정한 시점에 가입자에게 경고를 보냄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노출된 개인연금 가입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27) Bespoke SIPP 상품 가입자는 투자자문을 받으므로, Bespoke SIPP 제공 사업자는 디폴트옵션을 제공할 의무 없음

〈표 1〉 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정책 최종 규칙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개인연금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 개수	• 투자자문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한 개의 디폴트옵션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함
	디폴트옵션 제공 시점	•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제공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투자자문을 받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 시 디폴트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가장 효과적임
	디폴트옵션 설계	• 디폴트옵션의 명칭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목표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을 조정하는 생애주기(Life-styling) 요소의 반영은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의 타깃마켓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디폴트옵션 설계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디폴트옵션에 ESG 펀드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으나, 디폴트옵션 설계 시 기후변화와 ESG 리스크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함
	디폴트옵션 검토 주기	• 디폴트옵션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최소 3년마다 디폴트옵션 투자 성과 등을 검토하고 가입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디폴트옵션의 구성을 변경해야 함
현금성 자산 투자 경고	경고 대상	• 적립액의 25% 또는 1,000파운드 이상을 6개월 이상 현금성 자산으로만 보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경고 내용	• 전체 적립액 중 현금성 자산 비중에 대한 알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적립액 가치 하락분에 대한 설명, 투자 방식 변경 권고 등이 경고 내용에 포함됨
	자산평가 주기 및 경고 시점	• 현금성 자산에 대한 평가는 3개월마다 시행하며, 경고 시점은 개인연금 사업자가 시장 상황, 소비자 특성 등을 판단하여 재량에 따라 기준을 결정할 수 있음

자료: FCA(2022. 12), "Policy Statement 22/15: Improving outcomes in non-workplace pensions - feedback on CP21/32 and our final rules and guidance"

○ 이러한 정책의 최종 목표는 영국 사적 연금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바탕으로 개인연금 수익률을 제고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자산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결과는 ① 투자자문을 받지 않은 개인연금 가입자 니즈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설계, ② 디폴트옵션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 ③ 개인연금 적립액 중 대부분을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 수익 축소 등임

○ 해당 정책을 적용받는 개인연금 사업자는 2023년 12월 1일까지 최종 정책결정문과 규칙에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는 1년간의 이행 기간(Implementation period)을 거치게 됨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13호 [2023-2]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문의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02-3775-9021)
인쇄소 경성문화사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

